프로그램 ■■■

❖ 일시 : 2012년 3월 8일(목) 14:00∼17: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13층)❖ 사회 : 안석모(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시 간	순 서	내 용				
14:00 ~ 14:10	개 회	사회자 : 안석모 인권위 정책교육국장				
14:10 ~ 15:25	발 제 1	• 총평 /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 특별보호조 분야 이은주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 제 2	• 일반이행조치 / 일반원칙 분야 김영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발 제 3	• 시민적 권리와 자유 / 가정환경과 대안돌봄 /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분야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5:25 ~ 15:35	휴 식					
15:35 ~ 16:35	지정토론	김인숙 유엔 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사무국장 김형욱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강현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김정숙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정진현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차유진 법무부 인권정책과				
16:35 ~ 17:00	종합토론	참석자 모두				

목 차 ■■■

I	발제 1 1
	총평 /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 특별보호조치 분야 3
	이은주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ı	발제 2 37
	일반이행조치 / 일반원칙 분야
	김영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I	발제 3 71
	시민적 권리와 자유 / 가정환경과 대안돌봄 /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분야 · · 73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ı	지정토론99
	김인숙 유엔 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사무국장 ····································
	김형욱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109
	강현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115
	김정숙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119
	정진현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121
	차유진 법무부 인권정책과123

발제

1

총평 /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 특별보호조치 분야

이 **은 주**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총평 /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 특별보호조치 분야

이 은 주(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제 3, 4차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총평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후 단기간 가장 많은 국가인 191개국이 비준한 국제조약이다.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은 협약 가입 2년 후 아동권리를 위한 국가의 의무 이행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으며, 이후 매 5년 마다 국가의 의무 이행 현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후 그동안 1994년 11월에 1차, 2000년 5월 2차, 2008년 3, 4차 통합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아동인권관련 NGO 단체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한국의 아동인권에 관한 정확한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정부의 국가보고서 이외에 민간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보고서를 심의 한 후 1996년 1차, 2003년 2차, 2011년 3, 4차 보고서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은 점점 더 구체화되고 더 많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1996년 1차 권고문은 32항, 2003년 2차 권고문은 63개항, 2011년 3, 4차 권고문은 88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아동인권 개선을 위한 사회적 변화와 인권증진을 위한 체계적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3, 4차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안은 총 88개 항으

로 구성되었는데, 제 1~2항은 서문, 제 3~5항은 긍정적 측면, 제 6~87항 문제영역 및 권고사항, 제 88항 차기보고서(제 5, 6차 통합보고서를 2017년 6월 19일까지 제출)로 구성되었다. 3, 4차 권고사항의 심의의견을 보면, 민간보고서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주요한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가 제시한 국가보고서의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이 일부 반영된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의 노력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요구된다. 또한 정부는 향후 국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과정에서 민간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우리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동안 법과 정책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 왔다. 2011년 아동권리위원회 제 3, 4차 권고안도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개선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우리정부가 2011년 채택한 입양특례법(2011년 8월 개정), 민법(2011년 9월 개정), 초, 중등교육법시행령(2011년 3월 개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2011년 제정), 가사소송법(2010년 3월 개정), 장애아동복지지원법(2011년 제정), 아동복지법(2011년 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2011년 개정)의 법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장애인권리협약(2008년 12월)과 여성에 대한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2006년 10월)를 비준한 것을 환영하였다. 아동권리위원회는 2010년 제 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정책적 조치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한편 3, 4차 최종견해에서 다루어진 주제에서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1 차와 2차 권고사항에서 이미 지적한 내용이 다시 언급되었다는 점이다. 유보사항 철회,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과의 조화 및 재판반영, 아동권리의 독립적 모니 터링, 아동예산, 아동에 관한 자료수집, 홍보 및 교육, 차별금지, 아동견해 존중, 체벌, 표현·결사 및 집회의 자유, 입양, 장애아동, 건강 및 보건서비스, 교육, 이주아동, 성적착취, 소년사법은 이미 권고사항으로 나온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권고사항에서 또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지 어느덧 20여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3, 4차 국가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제시된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행을 권고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아동인권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가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국가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은 제 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의 아동청소년 관련 계획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제 1차 NAP는 1,2차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안을 국제적 기준으로 정하였고, 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수립되었으나, 실제 NAP 아동청소년 정책과제를 보면, 국제적 기준과 인권위원회 권고안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아동권리 유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과 NAP 아동청소년 정책을 분류해 본 결과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아동권리 유형에 따른 인권위 권고안과 NAP

아동권리유형	인권위 NAP 권고안	1, 2차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안	1차 NAP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 안전한 주거지, 충분한 영양, 기본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	아동의 기초보건 및 복지서비스 강화: 취약계층 보건 및 복지서비스 강화,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 유아-고교 보건교육 시행	보건예산 확대 및 의료의 접근성 확보, 종합적 청소년 보건 정책 수립	저소득층 자녀지원 드림스타트

아동권리유형	인권위 NAP 권고안	1, 2차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안	1차 NAP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국가의 아동양육과 보호책임 강화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을 보장: 대안가정 강화, 입양 정책 개선 및 유보철회, 아동학대예방센터 확대 및 사후관리와 예방강화, 아동 안전보장확대,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보호 강화, 처벌위주의 사법절차 개선, 시설보호 아동의 인권침해 예방	입양허가제 도입, 대안양육 확대, 아동 학대 전국 시스템 구축, 아동폭력 가/피해자 서비스 강화, 성학대 예방 및 서비스 강화	학교안전관리통합 시스템, 성매매 피해 청소년지원, 지역사회청소년 지원, 인터넷중독청소년
발달권 (교육, 여가, 문화 생활, 정보, 생각/ 양심/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영유아 교육지원 강화 및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권 보장 등 보육과 교육 혜택 확대: 취약계층 아동의 보육과 교육지원 확대, 공공보육/ 무상교육/육아휴직 등 영유아보호 강화, 아동종합지원센터 설치, 장애아동 지원 확대, 교육정책 개선, 가출청소년 지원	체벌금지 및 인식 개선 교육 정책 개선, 공교육 질 향상, 무상의무교육, 여아의 고등교육 확대 장애아동 보호 강화 및 차별개선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아동권리유형	인권위 NAP 권고안	1, 2차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안	1차 NAP
참여권 (자신의 의견표시, 자신과 관련 문제에 발언권, 단체가입 및 집회 참여의 권리)	아동의 참여권 보장: 아동정책 수립시 아동참여 보장, 학교생활에서 학생 참여 보장, 이혼 과정에서 아동의견 반영	자유로운 의견 표현권 보장, 징계 절차에서 아동 의견 존중, 아동견해 존중과 참여 증진	청소년참여기구 설치 및 운영, 아동옴부즈퍼슨 및 옴부즈키즈, 아동 청소년권리 센터 설치 및 운영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우리사회의 인권을 국제적 수준으로 증진시키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NAP의 아동청소년 관련 계획은 고위험군청소년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어 모든 아동의 인권보호와 보장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청소년 참여기구 설치 및 운영을 확충하였으나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촉구하는 것으로 실효성이 거의 없으며 청소년 동아리 및 방과후아카데미도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으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위한 지료 및 재활 체계 구축은 약간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아동옴부즈퍼슨 및 옴부즈키드 제도나 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설치 및 운영도 거의 실행되지 않은 형식적인 정책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이번 3, 4차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안은 그동안 우리사회의 아동권리 논의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주제들을 제시하였다. '국제협력', '아동권리와기업', '출생 등록', '망명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국가행동계획' 등의 주제는 우리사회에서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동권리위원회는 이러한 국제적 주제에 대해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앞으로 새로 권고 받은 사항에 대해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하여 이행과제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이번 제 3, 4차 권고안은 우리 정부의 아동관련 정책이지향해야 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제 1, 2차에 이어이번 제 3, 4차에서 다시 다루어진 주제에 대한 법률과 정책개선을 수립해야 한다.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반복적으로 다루어진 주제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하는 영역이다. 국제법은 정부에 의한 서면비준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이행이 가장 중요하다. 즉 협약의원칙들을 실행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체계와 재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Lansdown, 1999). 따라서 정부는 아동관련 법개정을 우리나라 전체 아동의 기본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법개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 새롭게 등장했던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해야한다. 특히 국제협력과 기업 및 아동권리에 관한 권고는 우리나라가 아동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관계에서 이행해야 할 역할과 임무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국제협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하며, 우리 기업이 국내외아동인권을 보장하는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한다.

2. 문제 영역 및 권고사항

1)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1)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과 관련하여 직업훈련 및 생활지 도를 포함하는 교육의 1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F.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협약 28, 29, 31조)

직업훈련 및 생활지도를 포함하는 교육

- 62. 위원회는 학생의 스트레스를 낮추려는 당사국의 노력과 아동이 놀이, 오락 및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프로그램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당사 국 교육제도 내에 여전히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극심한 경쟁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교과과정 외의 추가적인 사교육이 일반적이며, 이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심각하고 불균형한 스트레스에 노출시키고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을 염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균형이 사교육비로 인해 심화되고 있고, 사교육이 여가와 문화활동에 대한 아동권리의 충분한 실현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에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 위원회는 또한 괴롭힘, 특히 외국 출신 아이들에 대한 괴롭힘의 정도와 빈도가 증가하는 것과 이러한 행동을 하는데 휴대폰과 인터넷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 63.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권고한다.
 - 1) 협약 29조 및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No.1 (2001)을 고려

하여, 현 교육 및 관련 시험 제도를 평가하라.

- 2) 사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의존의 근본 원인과 사교육에서 비롯되는 대학 진학 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증 진하라.
- 3) 협약 31조에 따라 여가, 문화 및 오락 활동에 대한 아동권리를 보장하라.
- 4) 다음 정기보고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학교에 대한 접근선에 있어 평등을 이룩하는데 관련된 구체적 결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라
- 5) 학생간 괴롭힘을 방지하고 외국출신 아동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며 괴롭힘을 줄이기 위한 시도에 아동이 참여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화한다. 이러한 조치는 휴대폰이나 온라인 공간과 같이 교실과 학교 운동장 밖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따돌림과 괴롭힘을 다루어야 한다.

(2) 우리나라 교육현황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인권관련 정책권고 49건 중 61%를 차지하는 30건이 초·중등학생과 관련된 초·중등학교의 정책권고일 만큼 교육현장의 아동인권 상황은 상당히 열악하다.

① 아동청소년 사망률

교육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제 63항에서 현 교육정책 및 관련 시험제도 평가를 촉구하고 있다.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연보>에 의하면 1999년 아동청소년 사망률 1위는 교통사고로 13.1명으로 자살 5.0명의 두배가 넘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부터 자살이 아동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되었다.

〈표 2〉 아동청소년 사망원인 비교(인구만명당 사망자 수)

연도	1999년		2008년		2009년	
구분	원인	사망률	원인	원인 사망률		사망률
1위	교통사고	13.1	자살	6.4	자살	7.5
2위	자살	5.0	교통사고	5.5	교통사고	5.1
3위	암	4.2	암	3.1	암	3.1
4위	익사사고	3.2	익사사고	1.1	익사사고	0.8
5위	추락사고	1.6	선천기형	0.7	심장질환	0.7

청소년의 학급별 자살 상황을 보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로 진학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아래 <표 3>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학년이 올라갈 수록 자살인원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3〉 2006년 이후 청소년 자살 현황

급별	급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자살인원	17	224	494	735

통계청의 2010년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15~19세 청소년 중 자살 충동을 느낀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성적문제(진학 포함)로 53.4%로 나타났다. 즉, 과반수 이상의 많은 학생들이 입시위주의 경쟁적 교육정책으로 자살충동을 느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청소년(15~19세)의 자살에 대한 충동 이유

	성적, 진학문제	외로움, 고독	가정 불화			기타
비율	53.4	11.2	12.6	10.5	1.6	10.7

청소년들이 자살충동까지 느끼지는 않지만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도 공부였다. 2002년과 비교하여 2010년 더 많은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같이 학생들의 성적 스트레스는 아동의 정신건강의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표 5〉청소년(15~19세)이 고민하는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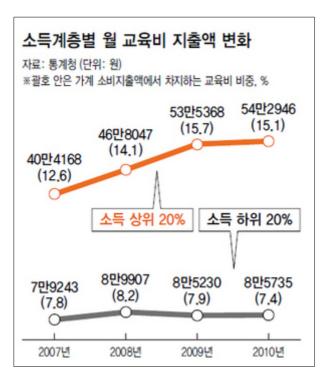
고민	공부 (성적, 적성)	외모/ 건강	가정 환경	용돈 부족	직업	친구 (우정)	이성 교제	학교 폭력	흡연, 음주	기타/ 없음
2002	48.9	18.4	6.8	5.7	5.2	3.3	5.5	1.2	1.5	3.5
2010	55.3	16.6	6.8	4.1	10.2	2.2	1	0.2	0.1	0.9

한편 학교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은 연간 6-7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전체 초·중·고 재학생 724만여명의 약 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 중 다시 복학하거나 편입하는 비율은 14-15%에 불가한데, 이들중 20-30%는 다시 학교 학업을 중단한다. 현재 학업을 중단하는 아동청소년은 전국적으로 3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전국에서 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2010년 청소년 위기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결과 전체 청소년 252만 6천명 중 2.9%인 7만 3천명이즉각적 개입이 필요한 고위험군으로, 35만 8천명(14.2%)는 잠재적 위험군으로 조사되었다. 이와같이 현재 교육정책에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수에 이르고 있는데, 대안교육이나 대안학교 등이들을 위한 대응방안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② 교육비 지출

한국은행의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를 보면, 2010년 고소득층(상위 20%)의 교육비 지출은 54만 3000원으로 저소득층(하위 20%)의 교육비 8만 6000원의 6배를 넘었다. 2005년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출액은 7만 6000원이었고 고소득층 지출액은 38만이었는데, 5년동안 저소득층의 교육비는 1만원 정도 증가한데 비해 고소득층의 교육비는 16만원 이상 증가하였다.



[그림 1] 소득계층별 월 교육비 지출액 변화

우리나라 도시가계 총지출에서 교육비 비중은 1982년 7.2%에서 2010년 13.3%로 꾸준히 상승해 왔다. 저소득층의 월평균 소비지출액 가운데 교육비 비중은 2003년 7.1%에서 2010년 7.4%로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고소득층 월 평균 지출에서 교육비 비중은 2003년 12.3%에서 2010년 15.1%로 2.8% 증가했다. 평균 교육비도 고소 득층은 2003년 31만 9000원에서 2010년 54만 2000원으로 확대되었으나, 저소득층은 2003년 6만 5000원에서 2010년 8만 5000원으로 약간 상승하였다.

그러나 사교육비는 계층간의 격차가 더 심하게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사교육비는 2003년 3만 1000원에서 2010년 3만 8000원으로 1.22배 증가한 데 비하여 고소 득층은 18만 9000원에서 30만 9000원으로 1.64배 증가했다. 학원비의 경우 계층간 교육비 격차가 2003년 6.04에서 2010년 8.11배까지 나타났다.

일반 정규교육과정에서도 소득간 양극화는 같은 양상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월별 정규교육비는 2003년 2만 8000원에서 2010년 3만 9000원으로 1.39배 증가하였으나, 고소득층은 10만 7000원에서 19만 4000원으로 1.82배 상승하였다. 이와같은 소득계층별 교육비 격차는 아동이 가질 수 있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게 되고, 이후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져서 빈곤의 대물림 위험가능성이 높아진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 <OECD 교육지표> 자료에 의하면, GDP 대비 공교육비 중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4.2%로 OECD 평균 4.8%보다 낮은 반면, 민간이부담하는 비율은 2.8%로 OECD 평균 0.9%의 3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보면, 초등교육 5,437¹⁾(OECD 평균 6,741), 중등교육 7,860(8,267), 고등교육 8,920(12,907)로 전반적으로 정부의 공교육비 지출이 미흡한상황이다.

¹⁾ 미국달러의 구매력 지수(PPP) 환산액으로, 2007년 PPP 환율은 1\$당 755.28이다.

③ 학교폭력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면서 2012. 2. 26일 정부는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교육정책의 방향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자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경험하였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를 만드는 과정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현 교육정책의 획기적인 개선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이 전혀 효과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학교폭력이 발생한 이후 격리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 처벌을 확대하는 것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실효성을 가지게 될 지는 의문이다. 특히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징계사항 기록을 의무화하는 방침은 이후 가해학생의 성장발달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다. 학교폭력의 진정한 근절은 학교에서 폭력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학생이상호존중하는 인권친화적 분위기를 형성할 때 이루어진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입하는 근시안적인 사후대책이 아닌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대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인권위가 발표한 '이주아동 교육권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2010년)'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학교 내에서 또래 집단으로부터 놀림 · 무시 · 가난한 나라출신에 대한 비하 · 인종차별 등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외국 태생 중도입국자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초 · 중 · 고교생 가운데 42%가 우리말 발음이 서툴러 따돌림을 받았다고 응답했고, 피부색때문에 놀림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25%에 달했다.

다문화가정 학생 학교폭력 예방은 학생 개인과 부모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 이들을 학교폭력으로부 터 보호해야 한다. 일선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화 교 육과 별개로 국가별 교육이 필요하다. 다문화 아이들이 한국 사회를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모 나라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기 자신과 부모에 대한 자궁심을 갖 게 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해당 국가 문화와 언어교육을 병행하여 한 국아동들의 다른 나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등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 교육 을 실행해야 한다.

2) 특별보호조치

- (1)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 G. 특별보호조치(협약 22, 30, 38, 39, 40, 37(b)-(d) 및 32-36조)

이주 상황의 아동

- 68. 위원회는 당사국이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도록 2007년 재한외국인처 우기본법을 채택하고 불법체류자 자녀의 학교 입학과 전학을 허용하도록 2008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주 아동의 등교율이 여전히 낮고, 자녀가 초, 중학교를 다니도록 해야 하는 부 모의 법적 의무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부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려한다.
- 69. 위원회는 불법체류자 자녀를 포함한 이주아동이 교육에 접근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국내법이 협약 조항에 합치되도록 할 것을 독려한다.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 70. 위원회는 아동착취방지를 위한 2005년 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 수립을 환영하나, 다음의 사항에 대해 우려한다.
 - a) 근로아동의 수 증가
 - b) 아동을 채용하는 고용주들이 15세가 넘는 아동을 야간 근무시키거나 최 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주는 등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관련 기준조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음
 - c)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게시간과 같은 변칙적 노동관행을 규제하는 법 조항 불충분
 - d) 노동 감독 불충분
 - e) 만연한 언어적, 성적 학대 및 폭력 발생으로 인한 근로아동 문제 악화
 - f) 연예인이나 성적 대상으로 고용되는 아동의 수 증가
- 71.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아동노동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
 - b) 야간근무금지의 효과적인 시행과 최저임금 지급등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조건 기준이 엄격히 시행되도록 하라
 - c) 변칙적 노동관행을 규제하는 추가적인 법 조항을 제정하라
 - d) 근로환경 전반을 포괄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노동 감독을 개선하라
 - e) 근무환경에서 폭력과 성추행 문제를 다루고 방지할 효과적인 조치를 제 공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묻고 재활을 돕는 효과 적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라

성적착취

- 72. 위원회는 아동 성착취에 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피해자에 임시 및 긴급 생활지원, 법률 및 의료지원, 직업훈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2008년 개정안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또한 성범죄 피해아동의 상담, 보호, 치료 및 피해자를 위한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원스톱지원센터의 설립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표명한다.
 - a) 아동 성폭력 급증과 높은 음란물 소비율
 - b) 아동 성착취에 대한 낮은 기소율
 - c) 남아 또는 남성 대상 및 외국어로 진행되는 피해자 재활 서비스 부족
 - d) 아동학대 범죄율 증가에도 불가하고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 산의 삭감
- 73. 위원회는 당사국의 국내법이 협약 35조와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 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소의 2조 및 3조에 합치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 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 사항을 권고한다.
 - a)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 b) 어떠한 수단에 의하든 성적착취를 위해 아동을 제공, 전달 또는 인수하는 데 해당되는 모든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포함, 아동 성착취를 효과적으로 기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라
 - c)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범죄의 심각성에 걸맞는 수준의 처벌이 형사사법제 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라
 - d) 형사책임 면제 없이 성범죄자의 교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라
 - e) 여아뿐 아니라 남아에게도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신매매 및 성착취

피해자의 주요 출신국을 고려하며 이러낳 지원활동이 다국어로 이루어지도록 하라.

인신매매

- 74. 위원회를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의 채택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당사국법이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있으나, 다수의 여성 및 아동이 성착취와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한국으로부터, 한국을 통하여, 또는 국내에서인신매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인신매매범의 기소율 및유죄율이 낮다는 사실에 특히 우려를 표시한다.
- 75.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아동매매, 인신매매, 유괴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더 나아가 위원 회는 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완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의 예방,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76. 위원회는 대한민국 법률이 의정서 2조와 3조에 명시된 범죄 모두를 적절히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우려를 반복한다. 또한 위원회는 앞서(para. 35) 언급된 제 3자에 의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방지할 조치의 부재가 아동 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선택의정서 3조 1항과 관련된 범죄가 한국인 또는 한국에 상주하는 자에 의해 외국에서 행하여졌을 때, 또는 피해자가 한국인일때, 해당 범죄에 대한 역외관할권의 확립을 위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대한민국이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우려를 반복한다.

- 77. 위원회는 다음의 권고를 반복한다.
 - a) 당사국의 국내법이 선택의정서 2조와 3조에 완전히 합치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 b) 선택의정서 4조 2항에 의거하여,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범죄가 한국인 또는 한국에 상주하는 자에 의해 행하여졌을 때 피해자가 한국인일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역외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하라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 78. 위원회는 18세 미만 아동의 적대행위 참여 혹은 강제 징집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는 점에 우려를 반복한다,
- 79.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권고사항을 반복한다.
 - a) 적대행위에 아동의 징집 및 참여와 관련한 선택의정서 조항 위반을 법으로 명백히 금지하라.
 - b) 모든 법률이 선택의정서의 조항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도록 보장하라
 - c) 모든 군사법, 매뉴얼 및 여타 군사 지침서들이 선택의정서의 정신 및 조 항과 일치도록 하라

소년사법 운영

80. 위원회는 당사국 내 청소년 비행율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고 높은 수준의 재범률 등 청소년 범죄율이 높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비행아동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근본원인을 다루기 보다 성인 구금시설에 비행아동을 구금하는 등 아동 범죄자를 사회가 효과적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조치 대신 징계조치를 늘리는 식으로만 청소년 범죄 대책이 이루어졌다는 사

실을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청소년전담검사 임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이들이 실제 소년사법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받지 않아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

- 81. 위원회는 청소년 범죄 및 높은 수준의 재범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한다. 이과정에서, 위원회는 대한 민국이 소년사법제도를 특히 37조, 39조 및 40조를 비롯한 협약과 소년사법 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베이징규칙), 소년비행방지를 위한 유엔가이 드라인(리야드 가이드라인), 피구금소년보호규칙(하바나 규칙), 형사사법제도 하에서의 아동을 위한 비엔나 행동지침, 청소년 사법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 10호(2007) 등을 포함한 여타 관련 기준에 완전히 합치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 a) 대한민국 전역에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가진 갖춘 소년전 문법원을 설립하라
 - b) 형법위반 혐의를 받는 아동에게 충분한 법률 및 기타 지원을 법적 절차 초반과 전반에 걸쳐 제공하라
 - c)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교화시설 혹은 구금시설에 있는 아동이 절대로 성인과 함께 구금되지 않고, 안전하고 아동을 배려하는 환경을 제공받고, 가족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음식, 교육, 직업훈련을 제공받을수 있도록 하라
 - d)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이 자신의 배치에 대한 결정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 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 e) 구금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자유박탈 대신 다이 버전(diversion), 보호관찰, 상담, 사회봉사, 집행유예 등 다른 대안을 장려

하라

f) 유엔 청소년사법정의에 관한 기구간 패널과 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 유엔아동기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및 비정부기구 등 패널 회원기구들이 개발한 기술적 지원도구를 활용하고, 패널 회원기구로부터 소년사법 분야의 기술적 지원을 구하라

범죄 목격자 및 피해자 보호

- 82.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16세 이하 아동 피해자와 목격자가 영상물 녹화로 진술을 할 수 있게 함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심문 및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전히 부적절하다.
 - a) 관계자들이 영상물 능숙하지 않아 피해자와 목격자가 진숙을 반복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 b) 법원이 영상 진술자료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
 - c) 피해자와 목격자가 이들을 배려하지 않는 환경에서 반대심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
 - d)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와의 합의가 요구된다.
 - e) 가해자 프라이버시를 위한 보호장치가 불충분하다.
 - f) 경찰관과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피해자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 의료진 및 법집행관이 피해자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 83. 위원회는 아동친화적인 절차규정을 더울 발전시키고 피해아동의 프라이버 시와 존엄성이 더 존중받도록 할 것을 권고하며, 적절한 법 조항과 규정을 통해 모든 피해아동과 범죄목격자 아동, 즉, 학대, 가정폭력, 성적 혹은 경제

적 착취, 유괴, 인신매매 등과 같은 범죄의 피해자와 목격자 아동이 협약이 요구하는 보호를 받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당사국이 아동범죄피해자 와 증인관련문제에서의 유엔 사법지침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2) 우리나라 현황

① 이주아동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출산을 하면 건강보험 등 우리나라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해 병원 치료 등 아동양육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아이만 본국으로 보내길 원하지만 미등록 상태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 불법으로 한국인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고 여권을 발급 받은 후 보내는 경우가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나중에 아이가 자라 한국에 들어오면 합법적으로 국적을 받고 취업을 할 수 있는 효과까지 고려하여 아동의 국적을 속여 아이만 외국으로 보내는 것이다. 이런 사례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정의 아동이 의료서비스, 교육 등 가장 기본적인 권리보장이 거의 안되기 때문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정의 아동들은 병원이나 학교에 갈 경우 부모의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기본적인 서비스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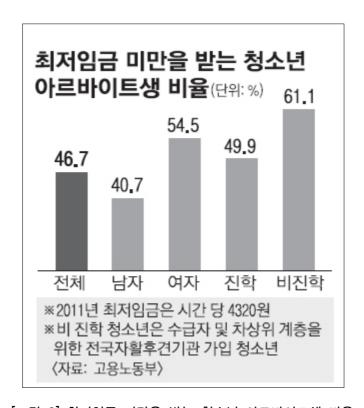
아동권리위원회 3, 4차 권고사항에서 제시된 것처럼(84항),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시급히 가입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족이 한국 국적을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신생아만 외국으로 보내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② 아동노동

2011년 고용노동부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2010. 6~2011. 6) 결과에 의하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청소년의 비율이 46.7%로 나타났다. 남녀별 성차에 따

른 비율도 크게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자 청소년(40.7%)보다 여자청소년(54.5%)이 최저임금을 더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여자청소년들은 폭언과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으며, 임금문제에 대해서도 고용주에게 강하게 항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진학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의 임금차이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전국자활후견기관 가입 청소년인 비진학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61.1%로 나타났다.

한편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중 23.3%는 부당 행위를 경험하였는데, 폭언 등 인격모독이 40.2%, 부상 또는 질병 27.7%, 부당해고 11.6%, 성폭행 6.0%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인권침해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비율

2010년 아동연예인 103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의 조사 결과, 매주 반나절 이상 수업에 빠진 경험이 있는 아동이 47.6%이고, 34.1%는 숙제할 시간이 거의 없고, 40%가 학습권이 보장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하루 8시간 이상 활동하는 아동연예인이 35.9%였고, 주당 40시간 이상도 10.3%이며, 야간 및 휴일 활동도 41.0%로 나타났다. 과도 노출 등 신체부위 노출 경험이 10.2%이고 이중 60%가 강요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4.3%가 불면증, 14.3%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등 정신건강도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 746명의 초등학교 운동부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언어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74.3%, 신체폭력을 당한 경우가 74.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성적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도 14.9%나 되었다. 2008년 인권위원회의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의하면, 폭력을 경험한 중·고교 학생운동선수는 78.8%로 대다수의 학생운동선수들이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폭력을 경험한 경우도 63.8%로 높게 나타나 학생운동선수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운동선수들이 정규수업에 참여하는 시간은 시합이 있는 경우 평균 2시간으로 매우 짧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시합이 없는 경우조차 4.4시간으로 학생운동선수들의 학습권이 거의보장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같은 수업결손에 대해 82.1%는 보충수업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하여 학생운동선수들이 정규수업과 보충수업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아동 성폭력

김재엽은 2010년 10월 전국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교 2학년까지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동·청소년의 41.1%가 성폭력을 경험했고, 여학생은 2명 중 1명, 남학생은 3명 중 1명꼴로 성폭력 피해를 겪은 것으로 밝혀

졌다. 성폭력 가해자는 동급생이나 선·후배가 4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 내 성폭력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학생의 절반 이상인 53.5%가 자살을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발표된 대검찰청의 '2011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0년 발생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는 총 1175건이다. 이는 한 해 동안 평균적으로 아동 성폭력 범죄가하루에 3.2건 발생한 셈이다. 범죄자는 98.9%로 남성이 압도적이었고 범죄자의 전과는 초범이 40.8% 재범이 59.2%였으며 재범 동종 전과자의 경우 1년에서 3년 사이에 재범 비율이 50%를 넘어 아동 성폭력의 재범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타인이 58.8%, 이웃이나 친족·지인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27%에 달하며 친족에 의한 피해를 본 아동은 2009년 52명(9.5%), 2010년 81명(10.8%)였다. 특히 함께사는 친족이 66명으로 친족성범죄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201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1005명을 분석한 자료에서도 친족에 의한 성범죄가 17.2%로 조사됐다. 아동성별로 살펴보면, 여아 84.6%가 신체적 상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 아동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로 여아에 대한 아동성폭력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성폭력 피해 아동은 피해 과정에서 심한 쇼크를 상태를 경험하기 때문에 특별한 외상이 없는 경우에도 외상 진료와 함께 심리적, 정신적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아동성폭력은 놀이터나 학교 근처 등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들이 일상적 생활 중 큰 충격을 경험해서 그 두려움이 더욱 크고 정신치료 과정에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친족에 의해 피해를 경험한 아동들은 가해자와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충격이 커서 문제가 심각하다.

아동·청소년 전용 쉼터는 지난 2010년 여성가족부가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아 동·청소년을 집중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곳이다. 친족 성폭력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의한 성폭력을 말한다. 친족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집에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해자와의 분리가 중요하다. 전용쉼터는 친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 심리 치료 및 진학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지자체와 연계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전용쉼터는 경남과 경북 2곳뿐이고, 이곳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고작 30명으로 현재 쉼터 수용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쉼터 수용인원을 확대하여 성폭력 피해 아동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 당국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아동들은 더욱 심화된 치료 프로그램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최소한의 인건비를 받고 활동하다 보니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쉼터가 도심과 떨어진 지역에 있어 아동들의 교육 및 문화활동 참여에 한계가 있다.

④ 소년사법

정부는 2007년 촉법소년 범죄예방과 대처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나, 주요 목적은 촉법소년의 연령하향을 위한 '소년법' 개정, 보호관찰 감독 강화, 학교폭력 대처, 일부 청소년에 대한 복지지원 등에 제한되어 있다. 소년범죄는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총 범죄 대비 소년범죄는 2005년 3.4%(67,478건), 2006년 3.6%(69,211건), 2007년 4.4%(88,104건), 2008년 5.5%(134,992건), 2009년 4.5%(113,002건)이었다. 2009년도 전과가 없는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64.3%인데반해 전과가 있는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35.7%로 전년도에 비해 4.8% 증가하였다. 그러나 소년사법 관련 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년사법이 처리되고 있다. 검찰청에 소년전담검사가 있지만 성인사건도 동시에 처리하고 있고, 소년부 판사 역시 2년 정도 근무 후 다른 보직을 맡는 등 소년사법을 전담하는 법

원 인력이 거의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3.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안 이행을 위한 정책적 제언

우리나라는 201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20주년을 맞는 매우 뜻 깊은 해였다. 그 기간동안 우리나라는 아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많은 법 개정과 정책 개선을 이루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들은 2008년 국가보고서로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2011년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법과 정책이 아동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는데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이전보다 많고 구체적인 사항으로 88개항에 이르는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전 1, 2차 권고안에서 이미 제시되었던 주제들이 다시 권고사항에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국가보고서에 1, 2차 권고안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것을 여러 지표와 통계자료 및 법규를 통해 보여주었다. 그러나 많은 주제들이 재권고를 받은 것은 이러한 개선사항이 아동권리협약 수준에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아동관련 법과 정책 개선을 통해 아동권리협약 수준에 적합한 아동인권을 보장할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아동관련 법개정 및 정책수립과정에서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를 이행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개선에 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NAP에서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정책수립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아동권리협약의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하지 않

는다는 것은 제 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아동청소년 정책을 통해 알 수 있다.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국제적 기준으로 되어 있고 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수립되어야 할 제 1차 NAP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청소년 문제 중심의 사후대책에 초점을 두었다. 제 2차 NAP는 객관적 평가과정을 통해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수립되어야 한다.

2) 국내 아동인권뿐만 아니라 국외 아동인권도 보장할 수 있는 국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 3, 4차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안은 이전에 제시되지 않았던 국제협력, 기업과 아동인권, 출생등록, 난민아동 등 국제적으로 아동인권 보장 주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러한 주제들은 거의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이었는데,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주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국제협력과 아동인권과 기업문화 등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의 아동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아동인권 상황과 국외 아동 인권 상황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아동권리협약의 이념과 조화를 이루는 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나라 현 교육현황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아동들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장 심하게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상당히 크다. 아동교육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향후 교육정책은 교육의목적이 아동권리협약의 이념과 조화를 이루는지 평가를 해야 한다. 경쟁만 요구하

는 현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장기정책을 수립하며 상호존중하는 인권친화적 교육현장을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학업성취 및 시험위주의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아동들이 성적문제로 지나치게고민하거나 자살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을 위한대안교육체계도 마련하여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

4) 공교육 지원확대와 활성화로 교육불평등을 해소하여야 한다.

계층간 사교육비 차이가 증가하고 있음을 직시하여 공교육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사교육에 의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교육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주아동과 같은 취약계층 아동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5) 아동의 여가 및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

아동의 여가활동과 휴식권은 공교육에서조차 야간학습이나 보충학습 등을 통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의 여가활동과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여가 및 놀이시설의 기준과 안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전용놀이시설의 확대와 함께 아동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아동놀이시설은 아동의 연령대별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영유아(6세미만), 저연령 아동(7-12세 아동), 고연령 아동(12-18세)으로 구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6)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사후지원이 아닌 예방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자 및 가해자 중심의 사후대책이 아니라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확대해야 한다. 학교와 지역사회 및 가정의 연계 시스템

을 체계화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확대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주의해야 한다. 특히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언어 및 피부색의 차이로 인해 피해자가 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특 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7)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정책 수립과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해야 한다.

등록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미등록 이주노동자 아동의 의료서비스와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아동이 부모의 미등록 신분으로 인해 의료서비스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여 모든 이주노 동자 가정의 아동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8) 아동노동 현장에서 아동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고용주가 근 로조건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관련법과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아 동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이후 성장 및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부당행위나 성폭력 등의 문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노동현장에 있는 아동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아동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장기임을 고려하여 놀 권리 및 여가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아동연예인이 과 도한 시간동안 활동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지나친 신체노출을 본인의 동의 없이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스포츠선수들의 만연한 폭력 문제에 대해 이들이 인권침 해상황을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9) 아동성폭력 재범과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동성폭력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장기적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 성폭력 가해 자를 단순한 처벌중심의 방안에서 치료 중심적으로 선회하여 치료와 처벌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학교성폭력을 예방을 할 수 있는 예방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피해학생들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여 이들이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친족에 의한 아동성폭력은 피해 아동들에게 더 많은 심리적 충격을 미치게 되므로 이들이 가해자와 격리되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전용쉼터가 확대되어 모든 친족 피해 아동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10) 아동사법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아동은 성인과 다른 존재이므로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법원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은 앞으로 성장 및 발달해야 하는 존재로써 처벌위주의 사법적 판단보 다는 이들을 교육 및 치료를 제공하여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여 사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소년사 법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고용노동부(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2008).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____(2010). 이주아동 교육권 실태조사

교육과학기술부(2010). OECD 교육지표

대검찰청(2011). 2011년 범죄분석

법무부(2007). 제 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0).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 근로권, 학습권 실태 분석, 이슈리 포트 1호.

통계청(2011). 사회조사

합기도 전국대회 우승했던 중학생, 지금 뭐하나 보니…

| 기사입력 2012-03-05 11:47 | 최종수정 2012-03-05 14:57

경계에 서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들 성인까지 불행 이어지는 악순환 끊어야

임동민(21·가명)군은 어릴 적부터 운동을 즐겼다. 중학생 때 합기도를 배운지 2년 만에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할 정도로 소질도 있었다. 이후 테니스 등 다양한 운동을 배운 임군은 나중에 커서 축구선수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그 꿈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무너졌다. 그의 어머니가 반강제적으로 그를 야구 특기생으로 야구부가 있는 고등학교에 보낸 것이다. 단지 고등학교가 명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임군은 억지로 야구를 하다 보니 실력이 늘지도 않았고 스트레스만 쌓여갔다. 결국 다혈질인 성격을 억누르지 못하고 야구부를 그만뒀다.

체육특기생으로 들어간 그는 동급생들의 성적을 따라갈 수 없었고, 학교생활에 적응하기도 점점 힘들었다. 결국 17살 나이에 자퇴를 결심하게 됐다. 이후 주유소와 음식점 등을 옮기며 일하던 임군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가출과 음주 등 비행에 빠지게 됐고, 2010년 무면허 운전과 오토바이 장물 매매로 소년원에 들어가게 됐다.

소년원을 출소한 뒤에도 임군의 생활은 달라지지 않았다. 낮에는 집에서 자고, 밤이면 친구들을 만나 비행을 일삼았다. 그러던 중 임군은 보호관찰사에게 숨기고 있던 속마음을 털어놨다. "정말 미칠 지경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직 장을 구하려 했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다"고 했다.

임군의 변화 의지를 확인한 보호관찰사는 경기청소년상담센터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다. 이엘리야 자립지원팀장은 "처음 동민이를 만났을 때는 대인관계 형성 에 문제가 많았다"며 "경제관념이나 목표도 없어 사회진출을 돕는 프로그램을 연 계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도내 시군마다 설치되어 있으며, 국번없이 1388번으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임군은 센터의 도움으로 대형마트에서 취직해 6개월째 근무 중이며, 내년에는 군입대를 계획하고 있다. 그는 "과체중으로 4급 판정을 받았는데, 현역을 가기 위해 열심히 운동 중이다. 군대 다녀오면 검정고시도 보고대학도 가고 싶다"고 말했다.

임군과 같은 학업중단자는 연간 6만~7만 명에 이른다. 전체 초·중·고 재학생 (724만여 명)의 1% 정도이며, 그 중 다시 복학·편입하는 비율은 14~15%에 불과하다. 복학·편입을 해도 20~30%는 다시 학업을 중단한다. 현재 학업중단 상태의청소년은 전국적으로 30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전국에서 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2010년 청소년 위기실태조사 결과 전체 청소년 252만6000명 중 2.9%가 즉각적 개입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이다. 그 중 고위험군이 7만3000명(2.9%), 잠재적 위험군이 35만8000명(14.2%)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와 도교육청, 경찰청, 학부모 청소년 전문가는 이같은 청소년 문제 해결 대책으로 4개분야 23개의 과제를 선정, 이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제2의 '도가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동형 성교육 버스를 농·어촌 학교나 장애인 특수학급 등에 배치해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버스에는 영상물과 체험용 기자재가 갖춰져 있다.

경기도 정의돌 아동청소년과장은 "청소년기의 문제는 결국 성인까지 이어져 사회 전체의 불안 요소가 되기 때문에 청소년의 범죄노출과 탈선을 차단하기 위해도 공무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

2

일반이행조치 / 일반원칙 분야

김 영 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일반이행조치 / 일반원칙 분야

김 영 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를 평가하고 이행전략을 모색하는 일은 무척이나 방대한 작업이다. 이는 국가의 아동·청소년 관련 모든 영역의 실태를 진단하고 법과 정책·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가능성과 장애요인을 탐색하여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일로서, 심의의견의 조항 각각이 하나의 정책연구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권고 내용 하나하나가 향후 실태파악 등 기초 연구·조사의 주제이자 법·제도·정책 개발 검토 사안으로서, 이를 모두 아우르는 것은 발표자의 역량을 뛰어 넘는 일이라 판단되며, 발표자의 역할은 향후 각 권고내용별 심층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는 기본언급으로 한정해야 할 듯하다. 이 글에서는 '일반이행조치(A)'와 '일반원칙(B)'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읽어 나가면서 다른 발표자의 각론적 검토내용(C~G)에서 언급될 여지가 있거나 기존에도 자주 논의되었던 사안은 가급적 제외하고, 강조하거나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1)

¹⁾ 고딕으로 표시한 부분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임(보건복지부의 번역본 활용).

A. 일반이행조치 (협약 4, 42, 44(6)조)

위원회의 기존 권고사항

- 6. 위원회는 당사국의 2차 보고서(CRC/C/70/Add.14, 2002년 6월 26일),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따라 제출된 1차 보고서 (CRC/C/OPSC/KOR/CO/1, 2008),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따라 제출된 1차 보고서(CRC/C/OPAC/KOR/CO/1, 2008)를 심의하여 작성한 위원회의 우려 및 권고사항(CRC/C/15/Add.197, 2003년 3월 18일)의 일부를 해결하려는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우려 및 권고사항의 일부가 불충분하게 다뤄지거나 전혀 다뤄지지 않았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 7.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2차 정기보고서에 관한 위원회의 최종견해 중 아직 이행되지 않은 권고사항,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내 아동권리 분과위원회의 설립, 체벌의 전면 적인 금지, 그리고 아동이 겪는 고도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교육정책 검토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유보

- 8.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9조 3항에 대한 유보를 2008년 10월 철회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입양은 주무당국의 소관이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의 원칙을 최대로 고려하도록 보장한다는 21조 (a)항에 대한 유보와, 형사피의자또는 형사피고인인모든 아동이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법에 따라 판결의 재검토를 요청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40조 2항(b)(v)에 대한 유보를 유지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여긴다.
- 9. 위원회는 협약의 완전한 적용에 장애가 되는 21조 (a)항과 40조 2항 (b)(v)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제21조 (a)항은²⁾ 유보 사유가 되었던 국내법이 개정됨에 따라 철회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으로 보인다.

- 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2012. 2. 10. 일부개 정, 2013. 7. 1. 시행
- 입양특례법 제11조(가정법원의 허가) 등 2011. 8. 4. 전부개정, 2012. 8. 5. 시 행 예정

'D. 가정환경과 대안돌봄' 분야의 권고의견 49-50항에 유념하여 법 발효 전보호조치 마련, 해외입양제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법안 개정 작업이필요하다.

헤이그협약 비준과 관련한 국내적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를 위한 입법조치사항 재검토와 국내법 정비 및 비준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대비가 필요하다.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2011. 3)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을 위한 토론회(보건복지부·중앙입양정보원, 2011. 11. 18)

제40조 2-b-v항³) 상소권 제한은 유보는 '헌법' 제110조 제4항(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4) 및 '군사법원법' 제534조5)에 따라 군사재판에서 적용되고 있다. 지

²⁾ 협약 21조 (a)항: 아동의 입양은,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절차를 따라서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 친척 및 법정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기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 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³⁾ b.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사항을 보장 받는다.

⁽v)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결정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위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속적인 유보철회 권고를 받고 있는 바, 관련법률에 대한 재검토 등 유보철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상소권 제한과 관련해서는 분단국가의 불가피한 특성이라는 정부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할만한 논리를 찾지 못했거나 유보철회 필요성 인식이 부족했던 탓인지 1991년 협약 비준 이후 단 한차례도 유보철회를 위한 활발한 사회적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4차 국가보고서는 '비상계엄에서도 모든 범죄에 대한 상소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간첩죄, 유해음식물 공급죄, 초병에 대한 죄, 포로에 관한 죄 등에 대해 단심제로 적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는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성과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공공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para 15). 2011년 7월 제출한 추가보고서에서는 '향후 남북관계, 국내·외 정세 변화 등을 주시하여 아동의 상소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국내법과의 조화를 강구해 갈 계획이다'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para 43-1).

정부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상황을 상소권 제한 이유로 들고 있으나 국제사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마련된 협약은 제40조에서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은 인간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는

⁴⁾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 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⁵⁾ 제5편 전시 · 사변 시의 특례 <개정 2009.12.29>

제534조(특례규정)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2 편제3장 상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형법」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2. 「}군형법」제13조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과 그 미수범

^{3. 「}균형법」 제42조의 죄를 범한 사람

^{4. 「}군형법」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제59조 및 제78조의 죄를 범한 사람과 같은 법 제58조의2 및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5. 「}군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과 그 미수범

방식으로 처우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재심받을 권리를 부여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인권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관련 조항과 비교해볼 때 더욱 명확하다. B규약 제14조 5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하여 상급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사항으로 제4조 1항에서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비상사태의 존재가 공식으로 선포되어 있을 때에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당해 사태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이 규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혀 일반 성인국민의 경우는 비상시 단심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한편, 정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사전질의목록에서 '분단국의 안보상황과 국가적 긴급상황에서의 공공질서 회복과 같은 당사국의 특수한 상황이 법원에 대한 아동의 상소권 거부와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설명하라'고 주문한 것에 대해, 군사법원법 제534조가 아동의 상소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다음의 답변을 덧붙이고 있다(para. 41-42).

"42. 전시·사변 등으로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국가비상 사태에서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일시적이고 잠정 적으로만 적용되며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상소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형 법」제9조에 따라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아 동의 상소권이 문제되는 것은 14~17세까지의 아동이고, 14~17세 아동의 경우 어느 정도 사리분별능력이 있다고 보며, 간첩죄, 초병, 포로에 관한 죄 등 군부 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한정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에는 재심(new trial)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다." 이 내용은 14~17세 아동이 군부대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있는 것과 다름 아닌데, 이는 아동이 무력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보호해야 하는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비준국가로서는 상소권 주자의 타당성이 부족하다 하겠다.

우선 우리나라 병역 지원입대 가능 연령은 18세 이상으므로, 18세 미만 아동이 중대한 군사적 범죄를 저지를 대상이 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관련 조항을 유보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

무력분쟁 선택의정서에 따르면 정부는 18세 미만 군대구성원이 적대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제1조), 무장단체들이 어떤 경우에도 18세 미만 아동을 징집하거나 적대행위에 이용할 수 없도록 이를 금지하고 범죄화시키는 데 필요한 법적조치채택 등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고(제4조), 이 의정서에 반해 징집되거나 적대행위에 사용된 아동의 제대와 병역 해제를 보장하기 위해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6조). 아동이 적대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정부가 아동이 적대행위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열어놓고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상소권 제한 규정을 둔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무력분쟁 선택의정서 1차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 한국이 '18세 미만 아동의 적대행위 참여 혹은 강제 징집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음을 우려'하며 다음 사항을 권고하였다(para 12, 13).

- "a) 적대행위에 아동의 징집 및 참여와 관련하여 선택의정서의 조항을 위반하는 것을 법에 의해 금지한다.
- b) 모든 법률이 선택의정서의 조항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도록 보장한다.
- c) 모든 군사법, 소책자 및 다른 군사 지침서들이 선택의정서 정신 및 조항과 일치하도록 보장한다."

한국정부는 아동이 적대행위에 이용되는 것을 막는 철저한 법·제도적 노력을 수행할 의무 이행이 우선이지, 이러한 노력은 시도하지도 않고 비상시 18세 미만 아동의 적대행위를 과잉우려하여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정신에 비추어 적절치 못하다. 선택의정서 전문이 밝히고 있듯이 '아동의 권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특히 15세 미만의아동에 대한 징집이나 소집행위, 국내외적 무력분쟁시 아동을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가 전쟁범죄에 포함되어 있음을 주목'하여 이와 관련된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상소권은 무고한 아동이 유죄판결을 받거나 과도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심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어느 경우에서건 아동의 권리 보호에 필수 적인 권리이다. 한국정부는 협약 비준 시 협약과 상충되는 상소권 제한 조항 을 협약에 합치되도록 법을 정비하기보다는 비준을 유보하는 소극적인 결정 을 내렸지만, 변화된 환경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협약의 국내법적 수용 논의 를 재개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협약 제51조 2항은 '이 협약의 목표 및 목적 과 부합되지 않는 유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7조에서는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 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약에 합치되지 않은 국 내법이 있다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개정 가능성과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법률 비전문가적 견해로 '아동의 권리를 특별히 보호'하는 조치로서, 아동의 상소권을 제한하고 있는 '헌법' 제110조 제4항과 '군사법원법' 제534조에 '18 세 미만 아동은 이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추가 조문을 마련하여 국내법 을 협약의 정신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제안해 본다. 향후 군 관련 법률전문가 자문 등 상소권 제한 조항과 관련하여 보다 심층적인 검토와 사 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입법

- 10. 위원회는 당사국 헌법이 협약을 국내법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협약의 전반적인 조항을 이행하는 국내법규가 불충분하고 당사국 법원이 협약을 직접 적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사실에 우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한정된 예외상황 이외의 낙태를 법적으로 금지한 것은 임신한 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며, 이들을 안전하지 않은 불법낙태 및 /또는 학업중단 강요 및/또는 아이 입양 강요 등의 위험에 노출시켜 임신한 청소년이 처한 난국을 악화시키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음에 우려를 표명한다.
- 11. 위원회는 추가적인 관련 법 제정을 포함, 협약의 모든 조항이 사법판결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낙태관련 법률을 아동의 최상의 이익의 원칙에 전면적으로 합치하도록 검토할 것을 권고하며, 여기에는 청소년 미혼모가 안전하게 낙태할 수 있고, 불법낙태의 위험과 아이를 입양시키라는 강요에서 보호받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이 모든 적절한 수단으로 자국의 국내법 체제 내에서 협약의 규정이 법적 효력을 지니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일반논평 5호: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협약의 국내법으로의 수용은 협약 조문이 법원에서 직접 원용될 수 있으며, 국가 기관에 의해 적용되고 국내법이나 일반적 관행과 충돌이 있을 때 협약이 우선함을 의미하는 것이어야 한다. '조약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7조에 비추어 법률 간의 충돌이 있을 경우 협약이 항상 우선해야한다(위 일반논평 para. 20).

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우리정부의 국가보고서들은67) 헌법 제6조 1항에 의해

⁶⁾ 대한민국 헌법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국제조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있다. 헌법상 조약이 국내법적

협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조약의 자기집행성을 천명하고 있는데,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이 존재한다고 해도, 조약이 직접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경우와 별도의 추가 입법조치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정경수, 2004: 83).

협약의 입법조치와 관련하여 가입·비준시 입법조치가 중요한데, 한가지 특이한 사항은 아동권리협약의 경우 국회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헌법 제 60조에 따르면 국회는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는데, 당시 외무부는 협약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면서 "국회 동의 불요"라고 하여 입법사항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였고, 이에 따라 협약은 1991년 10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동 10월 23일에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11월 20일에 유엔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하였으며, 기탁일로부터 30일째 되는 1991년 12월 20일에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였다(정태수, 1991: 102-103). 정부는 관보 제12002호 (1991년 12월 23일)를 통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공포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조항들은 입법사항에 관한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회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영향이 가능한지 짚어 봐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정경수(2004)는 국회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명령과 같다고 볼 경우에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을 규범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8)

효력을 갖기 위해 별도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조약이 체결·공표되면 당연히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아동권리협약은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규범력을 인정받고 있는 조약으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보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아동매매, 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의 금지에 관한 선택의정서 1차 국가보고서, para. 8).

^{7) 3.} 대한민국은 영토 내 모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한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동 규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대부분 내용은 국내 관계 법률에 반영되어 있고, 적절한 행정적·입법적 조치를 근거로 아동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내적 이행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아동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1차 국가보고서. para. 3).

⁸⁾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조약의 단계구조를 인정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조약'과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약'으로 구분하고 있다(임지봉, 2004;

법원의 사법구제 단계에서 국제조약이 직접 원용되어 심리가 이루어진 사례는 희소하고 검토되더라도 국내법에 대한 부수적 존재로 다루어지는데 그 이유로는 우리 헌법의 기본권규정이 완전한 보호규범체제를 확립하고 있다는 도그마적 인식과 국내소송법상 상소사유의 제한(국제조약 위반은 직접적 상소이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사법부는 국제인권조약과 국내법, 특히 국내법률의 충돌여부를 다루지 않는다는 점 등이 있다.

가입·비준 후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실현을 국내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령 제·개정 시 인권영향평가제도와 국제인권기준평가제도 실시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정경수, 2004: 91-98).

한편, 2011년 12월 20일 유엔총회가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개인진정)》를 채택함에 따라 아동들의 권리침해 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직접 진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개인진정에 대한 조약기구 결정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약기구 결정을 국내에서 이행하는 특별법 제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종길, 2011: 253-254).

법관들이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적극적 수용자세와 실제 재판에의 적용 및 관련 법제의 정비 노력이 필요하며, 더불어 사법의 특성상 소송당사자들이 국제인권규 범을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실제 재판에서 적용례가 더 많이 축적될 수 있을 것이다(이인석, 2011). 아동권리 관련 소송과 사법판결 과정에서도 아동권 리협약 적용 사례를 다양하게 축적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국내 입법과 정과 협약 이행 관련 논의 주제들에 대해 국제법 학자와 아동권리 연구자 등의 법 ·제도 개선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입법'과 관련된 권고에 낙태(임신중지)의 법적 금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청소년 미혼모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결된 사안이라 판단된다.10) 우리사회

정경수, 2004: 82에서 재인용)

⁹⁾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

에서 낙태문제는 매우 논쟁적이고 민감한 이슈로서, 주로 결정권 vs 생명권이라는 이분법적 대립 구도의 논쟁으로 진행되어온 경향이 있는데 이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확산되고 있다. 태아의 생명이 여성의 결정권 과 갈등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모두 존중되는 해결책을 찾는 데 논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2011년 10월 유엔 건강권 특별보고관은 연례보고서에서 건 강권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재생산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국 정부가 취해야 사항으로 낙태의 비범죄화, 배우자 및 부모 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했던 낙태 절차의 폐지, 성적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에 관 한 교육에의 접근을 보장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번 협약 권고에서도 지적했듯 이 낙태를 범죄화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 임산 부이다. 음성적 낙태는 여성 생명의 위험성을 높이고 태아 유기, 원정 낙태, 새로 운 범죄문제 등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높이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43차 유 엔사회권규약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지적했듯이, 어린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은 주로 혼전 임신 때문으로 혼전 임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부재, 피임 등 예 방서비스 미흡, 혼전임신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 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이 문제가 여성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되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 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인공임신중절 예방 및 홍보 캠페인은 여성의 재생산 권(건강하고 안전한 임신, 출산, 양육의 권리)보다는 주로 종교단체 주도하의 생명 존중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여성들의 죄의식을 가중시키는 역효과의 문제가 제기된다(국가인권위원회, 2011).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 한부모가 안전하 게 낙태할 수 있고, 불법낙태의 위험과 아이 입양 강요에서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현실을 직시한 대책이 필요하다. 무조건 낙태를 범죄화하는 것 은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문제 해결을 지연시킬 것이다.

¹⁰⁾ single adolescent mothers 용어 사용 검토 필요 : 청소년미혼모 ⊂ 법적 용어인 '청소년 한부모'

¹¹⁾ http://www.humanpolicy.com/xe/3647

조정

- 12. 본 위원회는 당사국 내 협약이행 업무의 조정이 저하되었음을 우려하며, 이는 무 엇보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2008년 이래 운영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와 여성 가족부 등 각기 다른 정부부처에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정책이 이행되어 정책분 절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위원회는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의 발족에 주목하나, 청소년 정책조정의 개선이 필요함을 여전히 우려한다.
- 13.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 a)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복구하여 강화하고, 오히려 가급적이면 필요한 권한과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확보한 적절한 관련기구를 수립하라.
 - b)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다른 부처간, 그리고 관계 국가 및 지역 단체간 아동권리 관련 기능 및 관계를 명확히 하라. 이 과정에서 협약의 이행을 위해 대한민국이 취하는 모든 활동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라.

2008년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 담당부처의 통합과 2009년 이원화의 격동기를 거치며 중단되었던 아동과 청소년분야의 정책조정 기구 기능을 복구해야 한다. 아동정책 분야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청소년정책 분야의 '청소년관계기관 협의회'는 각자 부여받은 조정기능을 충실히 하면서, 특히 중복 인구집단을 정책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두 정책분야의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 / 종합적인 아동정책 수립, 관계부처 의견 조정, 정책 이행 감독ㆍ평가하는 심의ㆍ조정 기구 / 25인 이내(위원장 - 국무총리, 9개 부처 장관, 위촉직 15인 이내) /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실무위원회 운영

○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 여성가족부 산하 / 청소년정책 관련 기관간의 연계·조정과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의결 기구 / 15인 이내(위원장 - 여가 부장관, 9개 부처 차관, 기타 지명직) / 여가부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실무협 의회' 운영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제10조 3항 4호),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는 전문적인 사항 조사·연구를 위해 협의회에 5인 이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제3조 4항).

권고의견은 조정기구에 대해 '필요한 권한과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확보한 적절한 관련기구를 수립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이상적인 기구 형태와 성격에 대한 상상력이 부족하다. 위원회가 권고한 더 강한 권한과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 확보를 통해 추진해 나갈 장기적 운영모델에 대한 고민과 실험적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는 두 조정기구가 필요업무를 위탁하거나 전문인력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인력 선발, 상시 업무 공간 확보 등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마련하는 것부터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조정기구의 위상과 관련하여 중장기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연구에서는 생애발달에 따른 연관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을 아우르는 '아동·청소년· 청년정책조정위원회'형태의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청소년정책 분야 조정기구의 경우 이미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기능해본 경험이 있으나 획기적인 정책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을 볼 때, 조정기구의 위상이해당 정책분야의 위상을 뛰어넘어 강력한 조정기능을 수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최근 마련된 '청소년정책관계기관 실무협의회'와 같이 여성가족부차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

의 공무원 중 지명자로 위원을 구성하여 실무차원에서 보다 실질적인 협의·조정을 해나가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만 한다면 더 의미있는 조정효과를 가져올수도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정보 공유·교환이 협력·조정의 시작인만큼 정기적 회의를 통해 아동·청소년 이슈에 대해 공유하고 대책을 함께 고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행동계획

- 14. 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07-2011이 2007년 5월에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협약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포괄적이고 권리기반의 아동관련 국가행동계획의 결여를 계속하여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현 계획 만료후를 위한 후속 국가행동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 15. 위원회는 당사국이 관련 파트너들과의 협의 및 협력을 통해, 협약의 전 부문을 다루는 아동 관련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시행할 것과, 이를 위해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및 감시체제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덧붙여, 위원회는 시민사회 및 아동과 투명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2011년 이후 후속 국가행동계획 준비를 신속히 시작하도록 촉구하며, 이 과정에서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 명명된 유엔아동특별총회 결과 문서 및 중간평가 보고서를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우선 정부는 인권위원회의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권고안(2012~2016)에 따른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노력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인권위 권고안은 제1기 인권 NAP 아동·청소년 분야는 문제해결 중심으로 접근한 경향이 있어 2기에서는 모든 아동·청소년의 보편적 복지증진과 기본 권리 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핵심 추진과제에 여가·문화적 권리 등을 비롯한 일반아동·청소년을 위한 내용이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수립 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이행 노력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은 발제자도 지적했듯이 협약 권고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이라 하겠다(para. 14-15). 아동권리정책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아동권리증진기본계획(가칭)과 같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아동권리 신장을 위한 범부처적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구체적인 타임스케줄과 예산과 자원할당 방안을 세우고 과제별 담당부처/부서를 명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계획을 담도록 한다. 이 과정에는 정책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아동·청소년, 학부모와 국민들의 광범위한 참여가 함께 해야 할 것이다(제5·6차 국가보고서 제출일은 2017년 6월 19일임). 더불어 현재 수립 준비 중인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나 최근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분야에서 5년마다 수립하게 된 '아동정책기본계획'과 같이기존의 아동·청소년관련 국가행동계획에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권고안의 내용이통합되도록 노력하는 일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독립 모니터링

- 16. 위원회는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설립 및 현장에서 활동하는 아동권리옴부즈 퍼슨의 위촉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 제도가 국 가적 수준에서 협약의 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제대로 작동하는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한다.
 - a)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 법적 지위를 갖추지 않았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책정 받음.
 - b)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이 적극적으로 아동권리위반을 감

시 및 조사하고 진정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없음.

c)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임무권한은 당사국이 시행하는 연례성과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독립성과 지속성에 영향을 줄수 있음.

위원회는 또한 2009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21% 축소된 것과 이전의 권고사항에도 불구하고 아동권리 전문화를 이루지 못한 것에 우려한다.

17.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 명확한 임무권한을 갖도록 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과 센터와 옴부즈퍼슨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협약위반을 감시 및 조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독립적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독립적 인권기구의 역할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2호(2002)를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지속성 및 아동권리 관련 전문성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16-17. 독립모니터링

-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성격과 위상 문제 : 2차 권고문의 15-16 '공 공기관에 의한 협약이행 점검(monitoring by public authorities)' 기능에 해당 하는 조직이지 독립적 점검(independent monitoring) 기구가 아님 (아동정책 조정위원회가 협약이행 심의.조정 기구 -> 아동복지법 제10조 제4항. 위원 회는 국제조약 이행확인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음. 위탁기관이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 독립적 감시·조사 기구가 아님. 모니터링센터의 주요활동을 담당하는 '옴 부즈퍼슨'이라는 용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오해. 옴부즈퍼슨 -> 예. 모니

터링위원 명칭 조정 (아동권리분야에서는 독립기구인 북유럽의 옴부즈퍼 슨과 유사한 사례로 오해하기 쉬워 불필요한 지적을 받게 됨)

- 모니터링센터는 정부내 이행 점검을 위한(국가보고서 작성) 기능이 주
- 현재 독립모니터링은 인권위가 담당. 인권위의 아동권리 전문성 강화 필요
 - * 청소년분야 '청소년희망센터(인권센터)' 와의 연계

자원의 할당

- 18. 위원회는 사회분야 이행에 배정된 재원이 2008년 대비 16.5% 증가했음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높은 경제발전 수준을 고려할때, 이용 가능한 재원 대비 현재 배정된 재원의 비율은 낮은 수준이라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 2009년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이 부분에서 26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협약의 이행을 위해 사용 가능한재원의 수준에 있어 지역 당국간 차이가 상당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 19.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 a) 대한민국의 높은 경제발전 정도 및 OECD 수준에 좀더 걸맞도록 협약이행을 위해 배정된 재원 수준을 검토하고 증가시켜라.
 - b) 아동권리를 충분히 실현하고 지역당국 및 지리적 위치에 따른 아동간의 격차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동권리의 관점으로 재원배정을 평가하라. 이를 위해 분야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 필요 정도를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아동권리관련 항목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지속적으로 다루는 분야에 대해 재정배분을 설정하라.
 - c) 국가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 아동권리접근법을 활용하라. 즉 예산 내 아동을 위한 재원의 배분 및 사용을 추적하는 체계를 도입하여 아동을 위한 투자의 가

시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라. 위원회는 또한 분야별 투자가 어떻게 "아동의 최상의 이익원칙"에 부합하는 지를 가늠하는 영향평가에 이 추적체계를 활용 하여, 투자효과에 있어 여아 및 남아 간의 차이를 측정하도록 촉구한다.

- d) 가능하다면, 재원배정의 효과를 감시 및 측정할 수 있도록 결과기반 예산수립을 도입하라는 유엔권고안을 따르라.
- e) 특히 아동을 포함하는 공개대화를 통해 예산수립과정의 투명성 및 참여제도를 보장하라.
- f) 사회적 약자 우대 조치를 필요로 하는 빈곤 혹은 취약계층 아동, 예를 들어 난 민 또는 이주노동자의 자녀를 위한 전략적인 예산 방안을 수립하고, 경제위기, 자연재해 또는 다른 긴급상황에서도 이 예산이 지켜지도록 하라.
- g) "아동권리를 위한 재원 국가의 책임"에 관한 2007년 일반논의의 날에서 도출된 위원회의 권고안을 고려하라.

18-19. 자워의 할당

- 국가예산 수립 시 아동권리접근법 활용 : 연구수행으로 세부 방안 마련 (예: 여성분야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
- 아동관련 예산 확대 필요 뿐만 아니라, 정부가 내놓는 아동예산의 정의와 규모 산출방법의 과학화, 표준화 필요. 아동예산에 포함시키는 범위 차이로 자료들간에 데이터 다름(교육, 보육, 아동복지, 청소년정책 등). 표준화된 산출기준에 따라 시계열적, 국제적 비교
-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치구 균형발전 예산제 등

자료수집

20. 위원회는 당사국의 자료수집방법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협약의 범주에 포함되는

분야별로 자료가 나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아동의 상대적 빈곤과 극심한 빈곤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당사국에 존재하나, 빈곤아동에 대한 자료가 없고 빈곤감소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량 및 예산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어떠한 방안도 없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한다.

21. 위원회는 협약의 전 분야를 아우르며, 무엇보다 민족, 성별, 나이, 지역 및 사회경제적 배경 별로 구분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체계를 설립할 것을 대한민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더 나아가, 이러한 자료에서 포착될수 있는 경향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에 착수할 것을 권고한다.

20-21. 자료수집

- 아동종합실태조사,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국민 인권의식 조사 등 : 인권관련 통계데이터 생산.구축을 위한 연계
- 빈곤아동 데이터, 민족, 상별, 나이, 지역 및 사회경제적 배경별 구분되는 자료 → 아동청소년통계아카이브 구축 체계화

보급, 인식제고 및 교육연수

- 22. 위원회는 당사국이 교과과정에 인권 내용을 부분적으로 포함시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아동, 일반 대중, 그리고 아동관련 직업 종사자 사이에서 협약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 23. 위원회는 인식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음의 방안을 취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한다.
 - a) 학교 교과과정에 아동권리 및 인권에 관한 교육을 더 포함시켜라.

- b) 아동을 위해 또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단체들이 협약과 관련하여 충분한 연수를 받도록 하라.
- c) 협약의 대중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화하라.

22-23. 보급, 인식제고 및 교육연수

- 협약과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대중매체 활용 프로그램
- 인권위 인권교육법 제정 노력,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실행 준비
- 복지부와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홈페이지에 3.4차 권고문이 탑재되어 있지 않음.
 - * 인권의식조사 정례화

한편, 'Children'을 영문 해석 그대로 '아동'으로 표기하기보다는 사회통념과 정책적 연령구분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통칭하는 것이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촉진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현행법상 '아동'은 18세 미만, '청소년'은 9~24세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법적 근거와 별개로 한국사회에서 '아동'은 관습적으로 초등학생 연령을, '청소년' 은 중고등학생 연령을 이르는 용어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사전적 의미로도 '아동'은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중간, 즉 6~12세 정도의 어린이(네이버 백과사전, 국어사전)로 풀이된다.

이러한 관습적인 연령구분을 고려하여 1995년 3월 민간차원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점검을 위해 결성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가 정부 측의 번역어인 '유엔아동권리협약' 대신에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이라 칭했던 것을 볼수 있다. "조약에서 말하는 Child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이라는 단어는 이 대상을 포괄하기에는 부적절하다(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1997: 25)."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과 정부가 수립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도 아동인권 부문의 정책과제를 '아동·청소년' 부문으로 표기하여 2006년 당시 아동정책 주무부처(보건복지부)와 청소년정책 주무부처(국가청소년위원회) 모두를 인권정책 수행 주체로 적시하는 효과를 가져 온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대한민국정부, 2007).

2010년에는 통합되었던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이 다시 분할되면서 아동·청소년 인권문제를 다룰 부처 또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이원화되었다. 이에 따라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 분야 모두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인권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두 부처 모두를 아동·청소년 인권정책의 주무부처로 호명해 낼 필요가 있다.12)

국제협력

24. 대한민국이 점진적으로 국제원조에 대한 기여를 증가시켜 왔음을 인식하나. 위원

¹²⁾ Marta Santos Pais(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에 따르면, 협약이 아동기의 출발점은 없지만 상한선으로 18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국은 어느 특정 목적이나 활동을 위한 연령 설정 시 이를 원칙이나 참고 자료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서 18세 미만에 속하는 모든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아동에게 보다 도움이 될 목적으로 더 높게 연령을 설정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징병에 관한 최저 연령을 높이는 것)

또한 조약은 특정 목적을 위한 최저 연령 설정에 대해 어느 정도 유연성을 인정(예를 들어 제 32조의 최저 고용 연령, 제 40조의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하거나 당사국에 구체적인 방법을 부과하지 않고 당사국에 결정을 일임한다(예를 들어 제 28조에서의 의무교육의 기한, 제 24조 등에서의 부모의 동의 없는 의료 또는 법률 자문, 제 37조에서의 자유의 박탈 또는 법정 증언).

모든 경우에 대해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적용 가능할 하나의 단일 연령을 정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조약의 원칙과 규정으로 미루어 보아, 그러한 연령 제한이 비합리적으로 너무 어리게 설정되거나 자의적으로 정해져서는 안된다. 연령 제한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 보장 원칙을 고려해야 하고 차별을 초래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예를 들어 결혼적령기를 정하는 입법). 형사적 책임을 묻는 최저 연령을 판단함에 있어 주관적이거나 순전히 신체적이거나 막연한 개념을 적용한 기준은 아동, 특히 여자아이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예를 들어 아동 성매매 처벌). * 유엔, Manual on Human Rights Reporting-Under Six Maj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인권운동사랑방, 유엔아동권리협약 해설

회는 당사국의 국민총생산(GNP) 대비 국제원조 기여가 약 0.13%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당사국이 2015년까지 도달하기로 국제사회와 약속한 국민총생산 대비 0.7%라는 목표보다 현저히 낮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25.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조 목표인 국민총생산 대비 0.7%에 2015년까지 도달하고, 가능하다면 이를 넘어서도록 독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과 체결하는 국제협력협약에서 아동권리의 실현을 중요 우선 순위가 되도록 할 것을 권장하며, 이 과정에서 협약 상대국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참고할 것을 제안한다.

24-25. 국제협력

- 3.4차 심의에서 새롭게 대두된 주제. 아동권리 추진노력의 외연 확대
 - : 국제협력협약에서 아동권리 실현을 중요 우선순위가 되도록 할 것, 이 과 정에서 협약 상대국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견해 참고할 것
- 2005년 노르웨이 정부 국제개발보고서 : 국제 원조 개발 시 아동권리협약 에 기반하여 MDG목표달성 추구. 아동인권을 기반한 개발(CRBA)를 통한 MDG 목표 달성 기준을 보여줌.

아동권리와 재계

26. 위원회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를 가진 국가 중 하나인 당사국 재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환영하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재계는 환경문제에만 집중하는 듯 하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법률 중 특히 노동기준 및 최저임금을 다루는 부문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나, 당사국 영토 내 혹은 해외에서 기업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방지 및

경감을 규제하는 포괄적인 법체제의 부재를 지적한다. 특히, 위원회는 다음의 우려사항을 추가적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 a) 당사국은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의회가 강제아동노동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으므로 심각한 아동권리 위반에 연루된 상황이다.
- b) 당사국 기업들은 여러 국가에서 무엇보다 주거의 권리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토지임대계약을 체결 중이거나 체결할 계획이라고 보고되었다.
- c) 당사국이 이미 체결했거나 체결을 고려중인 자유무역협정 협상과정 전에 인권 영향평가가 선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27. "보호, 존중, 구제" 체계 보고서를 채택한 유엔인권이사회의 2008년 결의안 8/7 과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설 실무그룹에 지시한 2011년 6월 16일 결의안 14/7은 기업과 인권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 모두 아동의 권리가 포함될 것을 언급하며, 이에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 a) 대한민국 내에 본사를 둔 기업이 국내외 운영활동 중 공급망이나 계열사에 의해 발생되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규정하는 법 체제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기업사회책임 모델의 도입을 더욱 촉진하라. 여기에 보고를 위해 아동권리 지표와 매개변수가 포함되도록 장려해야 하며, 기업이 아동권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 평가가 반드시이루어져야 한다.
 - b) 상품 유입을 감시하여 강제아동노동을 통해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방지하고 무역협정 및 국내법을 활용해 아동노동을 사용하지 않은 상품만 국내로 유입 될 수 있도록 규정하라.

- c) 기업이 해외 사업에 참여시 아동권리를 존중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사업이 토착민이나 인권 및 아동권리에 관한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이들이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사전 동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행하는 해외정부와 협력하라.
- d) 자유무역협정 협상 및 체결 전에 아동권리를 포함하는 인권평가를 실시하고 인권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채택하라.

26-27. 아동권리와 재계(기업)

- 3.4차 심의에서 새롭게 대두. 기업활동과 자유무역협정 협상 전 인권평가 실시하고 인권 위반 방지 방안 마련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유엔개발프로그램, '무역협정과 인권' 보고서 발간 : 무역협정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평가

B. 일반원칙 (협약 2, 3, 6, 12조)

비차별

- 28.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안이 2007년 12월 국회에서 검토되지 않고 폐기된 것과 차별의 법률적 정의가 성적지향 및 국적에 기반한 차별 금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음에 유감을 표시한다. 또한, 위원회는 대한민국 내에 다양한형태로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러한 차별의 대상에는 다문화또는 이주노동자가정, 탈북자가정, 난민가정 출신 아동 및 장애 아동과 미혼모,특히 청소년 미혼모가 포함되며, 이들은 국가지원조치에서 배제되는 등 차별을받고 있다.
- 29.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 a) 협약 2조에 완전히 합치되는 법률의 채택을 목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제 정하라.
- b) 인식제고 및 대중교육 캠페인을 비롯, 취약계층과 소수집단 아동에 대한 차별 적 태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 c) 청소년 미혼모를 포함, 미혼모에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라.

28-29. 비차별

- 이번 권고에서는 청소년미혼모에 대한 언급이 새롭게 등장하고 강조되고 있음.
- 최근 국내에서도 관심 확산 : 여성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연구원 관련 연구, 인권위 권고
- 차별금지법 신속 제정

생명권. 생존 및 발달의 권리

- 30. 위원회는 당사국이 2004년 자살예방기본계획 등을 통해 청소년과 아동 자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심 각하게 높은 자살률에 대해 여전히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 31. 위원회는 영향을 받는 아동의 가정 내에서 그리고 교육제도 하에서 아동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도록 당사국에 촉구하며,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결 과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및 제도적, 행정적 방안 이행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정책과 방안에 충분한 예방조치와 후속절차가 포함되고, 모든 관련 아동에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충분한 수의 사회복지요원이 지원되도록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30-31. 생명권, 생존 및 발달의 권리

- 자살예방
-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구. 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구.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역할 기대(2012. 8. 시행), Wee프로젝트, 정신보건센터 등

아동의 최상의 이익의 원칙

- 32.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아동관련 법령 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의 원칙이 명확히 언급되지 않고, 아동 관련 사법, 행정결정 및 정책과 프로그램에 있어 본 원칙이 드물게 적용된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시한다.
- 33. 위원회는 당사국 내 아동과 관련되었거나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 행정, 사법절차 및 모든 정책, 프로그램 및 사업에 있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의 원칙이 적절히 통합되고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또한 모든 사법, 행정 결정의 법적 추론도 이 원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32-33. 아동의 최선의 이익

-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 행정, 사법절차 및 모든 정책, 프로그램 및 사업에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 적절히 통합되어야 : 구체적인 적용 방법과 사례에 대한 연구 필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필요 제안 '아동 최선의 이익'의 수준과 판단기준 논의
- 아동인권영향평가

아동견해의 존중

- 34. 아동 및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회의를 개최한 것을 환영하나, 위원회는 당사국의 법률상의 절차나 사회적 태도 모두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있어 그들 자신의 견해, 특히 15세 미만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계속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 35. 위원회는 아동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결정과정에 그들의 의견이 고려되도록 법 개정을 고려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12조에 합치하도록 다음의 사항을 제시한 이전의 권고를 반복한다.
 - (a)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포함하도록 개정하라. 교육기관의 징계과정과 학교를 포함한 행정기구와 법원에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아동 의 청문권이 촉진되고 아동의 견해가 존중되도록 입법조치를 포함한 효과적 인 조치를 취하라.
 - (b) 특히, 부모, 교육자, 정부 행정공무원, 사법부 및 일반사회에 아동의 청문권과 아동의 의사가 고려될 권리에 대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라.
 - (c)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정도와 그것이 정책과 프로그램 및 아동 자신에 끼친 영향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라.
 - (d) 아동의 청문권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2호(2009년)를 고려하라.

34-35. 아동견해의 존중

- 15세 미만 아동의 견해 고려를 위한 개선 노력 필요. 민법 등 관련 조항 발굴, 개정

- 학교에서의 아동견해 존중, 참여경험 중요
- 일반논평 12호에 따른 몇 가지 제언

2006년 아동의견표명권에 대한 일반토론의 날, 당시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인 Jaap Doek은 "아동·청소년은 아동권리협약의 권리소유자이다. 이것은 그들의 조약이다. 모든 조항은 중요하지만 제12조항은 모든 다른 조항들의 필수요소가 되어야 하므로 특히 더 중요하다"는 말로 참여권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불행히도 한국 아동·청소년의 경우 참여권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2008년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의 5개국 인권실태 조사결과, 청소년 참여권 보장수준에 대해 '보장하고 있다'는 응답이 중국이 6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53.9%), 스웨덴(47.9%), 한국(27.2%), 일본(21.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김영지외, 2008). 그러나 일본의 경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4.7%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한국이 49.3%로 최대치를 보이며 참여권 보장수준이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참여권 수준은 미흡하였으나한국 아동·청소년의 참여의식과 욕구는 높은 편으로 나타나 참여 활성화를 위한지원이 더욱 중요함을 보여 주었다는 점이다.

아동·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일반논평 12호 내용을 반영하여 아동·청소년 참여권의 세부목록을 정리 및 체계화하고 참여권 현황과 변화 및 진전사항, 과제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 참여권 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과 관련된 작업이 될 수 있다.

일반논평에서 아동·청소년 참여증진을 위해 제시된 과제들을 우리사회의 실천 과제로 발전시키는 실천적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초기 아동기의 의견존중(놀이, 몸짓, 표정, 낙서와 그림같은 비언어 형태의 의 사소통방법을 인식하고 존중), 장애아동, 소수인종과 이민자 자녀 등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의 의견존중에 대한 관심, 아동친화적인 사법 및 행정 절차와 환경(아동친화적 정보형태, 법정 디자인과 법조인들의 의복, 독립된 대기실 등), 아동 대리인 인권교육, 의견표명권 이행 5단계, 아동옴부즈퍼슨 등 독립적 인권기관 설립, 여자아이의 의견 존중에 특별한 관심, 인권교육, 대중매체의 역할, 아동의 직접 참여(정부와 직접적 관계), 부모 인권교육, 참여기구(소수 참여만 가능) 외 다양한 아동ㆍ청소년 의견청취 및 존중전략 개발 등

- 사례 벤치마킹: 아동권리위원회 보고과정에 아동 참여(Get ready for Geneva Project: 아동이 직접 작성한 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서 제출 및 유엔아동권리 위원회 프리세션 회의 참석, 아동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등 미디어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 운동), Young Equals(아동·청소년 연령차별 반대 캠페인), You've got the Right(인권훈련, 인권변호인단의 법률 자문)
- 구제기구 및 절차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개인진정제도 추이, 영국 Children's Rights Bill: ROCK coalition(CRC의 영국법 적용),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소위원회 가능성 검토, 인권위 진정절차에 대한 아동·청소년 친화적 정보제공, 아동친화적 절차
- 아동친화적 정보 발간·배포 : CRC, CRC 정부보고서, 일반논평(본 초안의 보 완작업 진행, 아동 버전 자료 제작 등), 참여기술과 방법에 대한 아동친화적 자료 제작·배포, 인권교육·훈련프로그램, 아동 친화적 형태로 제작된 아동 ·청소년 중장기 정책 홍보자료
- 참여관련 연구와 학술적 토론 활성화 : 아동과 함께하는 연구, 참여관련 학회 (2010. 5. 7. 한국시민청소년학회 창립)
- 일반논평 12호의 각론별 심층연구 : 가정, 학교, 사회 각 장별 참여관련 연구주 제(예 : 가사사건 절차에서의 의견표명권,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참여 등)
- 학생인권 신장 노력 : 교육청 단위 학생인권조례, 지역인권조례 제정운동, 유

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방향을 반영하여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생활지도 제 규정 표준안을 작성・일선학교에 배포(경남교육청 사례)¹³⁾

- 참여권 관련 논쟁거리, 심층연구 과제 발굴과 연구 : 협약 12조와 13조의 차이,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대한 판단, 아동·청소년 존재의 법적 지위, 아동능력 사정의 방법(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의 판단 기준), 참여권 세부조항의 헌법적 분석, 친권제한 관련연구, 교사와 학생의 권리 관계 등

H. 국제 인권조약의 비준

84.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권리의 실현을 더욱 강화하도록,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과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포함, 모든 주요 인권조약에 가입할 것을 권장한다.

I. 지역 및 국제 기구와의 협력

85.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국내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내에서 협약과 여타 인권조약의 이행을 위해 아세안여성아동위원회와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13) &}quot;학생생활규정": 제4조(권리) 제2항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명시, 제10조 (두발) 제1항 '두발은 학교 구성원(학생, 교원, 학부모)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학생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다'.

[&]quot;학생선도(징계) 규정": 제3조(선도원칙) 제3항 '학생에게 선도(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7조(사안설명) 제2항 '학생에게 선도(징계)를 가할 시 해당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8조(재심청구) '제2항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제22조(규정의 개정) 제1항 '학생생활규정개정위원회에 반드시 학생대표 참여'제2항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선도규정 심의 시 학생 대표 참관'제3항 '학생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를 형성 한 후 개정'

J. 후속조치 및 배포

- 86. 위원회는 특히 정부, 국회, 지역기구 및 기타 지방정부에 본 권고사항을 전달하여 이를 고려하고 추가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권고사항이 온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87. 또한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제출한 제3, 4차 통합 정기보고서, 서면답변 및 위원회가 채택한 관련 권고사항(최종견해)이 대한민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인터넷과 여타 매체를 통해 일반 대중, 시민사회단체, 청소년단체, 전문가 단체 및 아동에 널리 제공되도록 하여, 논의를 불러 일으키고 본 협약과 이의 이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K. 차기 보고서

88. 위원회는 본 최종견해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제5, 6차 통합정기보고서를 2017년 6월 19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당사국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2010년 10월 1일에 채택된 협약별 보고지침(CRC/C/58/Rev.2)에 주의하고, 향후 보고서가 본 지침을 준수하여 60쪽을 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보고지침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분량 제한을 넘기는 보고서가 제출되는 경우 당사국에 보고서를 검토하고 위에 언급된 지침에 맞추어 보고서를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만약 당사국이 보고서를 검토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 조약기구의 검토를 위한 보고서의 번역이 보장될 수 없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발제

3

시민적 권리와 자유 / 가정환경과 대안돌봄 /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분야

> 김 형 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시민적 권리와 자유 / 가정환경과 대안돌봄 /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분야

김 형 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유엔 아동권리협약 심의 개요

□ 유엔아동권리협약

- 유엔에서 1989년 11월 채택,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비준
- 협약 당사국은 5년마다 협약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유엔아동 권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의무가 있음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 기구로서, 18명으로 위원으로 구성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이 제출한 국가보고서 심의 및 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

□ 국가보고서 심의 절차

- 당사국의 국가보고서 제출
- NGO 및 국가인권기구의 보고서 제출
- 회기전 위원회에서 추가질의 목록 결정

- 회기전 당사국의 추가질의 목록에 대한 답변서 제출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정부대표단 대상, 1일 8시간 심의)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권고사항 발표
- 최종견해 권고사항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차기 국가보고서 제출시 그 이 행관련 사항을 포함시켜 보고

□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경과

- 1) 제3·4차 국가보고서 제출 및 추가질의 답변서 제출(2008. 12 2011. 7)
- 2008. 12: 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출
- 2010. 12: NGO 단체의 민간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출
- 2011. 3: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서 제출 요청
- 2011. 3 7: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 및 운영
 - 부처별 제3·4차 국가보고서 업데이트 및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서 작성
 - 16개 부처 및 기관 참여: 복지부, 교과부, 외교부, 법무부, 여가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지경부, 노동부, 국토부, 통계청, 경찰청, 방위사업청,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2011. 7: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서 제출
- 2) 심의를 위한 정부대표단 선정 및 심의준비(2011. 8 9)
- 2011. 8: 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위한 정부대표단 선정
 •복지부, 교과부, 외교부, 법무부, 여가부, 국방부, 노동부 등 7개
 부처

-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통역사 (총 19명, 수석대표: 주 제네바 대사)
- 2011. 8 9: 정부대표단 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준비 회의 •심의대비 참고자료, 예상질의 답변서 검토 및 논의

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심의 및 권고사항(2011. 9 - 10)

- 2011. 9. 21: 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8시간) • 7개 부처 및 기관 19명 참석(수석대표: 제네바 대사)
- 2011. 10. 6: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권고사항 발표

□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1) 긍정적 측면

- 민법과 입양특례법 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
- 가사소송법 개정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 아동복지법 개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여성차별철폐협약 승인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수립(2차)

2) 권고사항

- 총 94개에 걸쳐 권고사항 제시
- 권고사항 94개, 관련 부처 및 기관 12개

□ 심의결과 후속조치

- 2017년 6월 19일 아동권리협약 제5 · 6차 국가보고서 제출 예정
- 정기적으로 권고사항에 대한 부처별 이행조치계획 확인 및 취합 예정
-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홍보 예정

2.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C. 시민권과 자유

1) 출생신고

- 협약 7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모의 법적 지위 및 또는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이 신고되도록 조치하고, 출생신고에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가 명시되도록 보장할 것

2) 사항,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가 학생의 종교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협약 14조3항에 따라 모든 경우에 아동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가 존중 되도록 조치할 것

3) 표현,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

- 법률·교육부 발행지침·교칙을 수정하여 아동이 의사결정 과정 및 교내외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4) 체벌

- 가정, 학교, 기타 기관에서 체벌을 전면금지 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 개정
- 아동학대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대중교육 캠페인을 실시하고, 그린 마일리 지 및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장려할 것
- 체벌 피해자 아동이 체벌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할 것

5) 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

- 아동학대 신고자의 안전을 고려하는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아동학대를 신고 할 법적의무를 강화하고 확대할 것
-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를 증설하고, 학대피해자를 위한 재활지원 등 인적, 기 술적, 재정적 자원을 배정할 것
-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3호(2011)를 고려할 것
-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철폐를 우선할 것
- 아동폭력보고서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다음 정기보고서에 포함
 -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국가전략 개발
 -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을 금지하는 법 도입
 - 자료 수집, 분석, 보급 체계 통합 및 아동폭력관련 연구

- 아동폭력에 관하여 유엔아동기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세계보건기구, 국제노동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유엔난민기구 등과 협력할 것

D. 가정환경과 대안 돌봄

1) 가정환경상실아동

- 대안돌봄시설 내 아동에게 제공되는 돌봄의 유형을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
- 대안돌봄시설 내 아동학대 관련 진정접수, 조사 및 기소제도를 보장하고, 학대피해자들이 진정절차, 상담, 진료 및 필요한 다른 회복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대안돌봄시설 내 아동이 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하거나 부모와 연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2009. 11. 20에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안 A/RES/64/142에 포함된 아동대안돌 봄에 관한 지침을 충분히 고려할 것

2) 입양

- 중앙입양정보원이 헤이그협약 6조에 따라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무권한을 규정하고,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것
- 입양과정에서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견해에 적절한 중요성을 부과하며, 아동이익최우선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도록 할 것
-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입양 보내고자 할 때 미혼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가 실질적으로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도록 할 것
- 해외입양을 포함한 모든 입양이 명확한 임무권한을 가지고 사법적 감독과 규

제를 담당할 역량을 가진 중앙기구의 허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

- 국제입양 관련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1993) 비준을 고려할 것

E.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1) 장애아동

- 모든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
- 장애아동의 교육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의 수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사와 감독관에게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는 조치를 할 것
- 장애인에 관한 특수교육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충분한 예산 및 인력 지원
- 장애아동이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2) 건강 및 보건서비스

- 보건예산을 증액하고 저소득 가정이 무상으로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시설 체계를 구축하고, 전 지역에 소아과 진료 및 응급진료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중소 지역병원에 대한 재정적 · 기술적 · 인적 자원 지원

3) 정신건강

- 아동의 우울증 및 자살원인에 대한 조사에 기반하여 아동정신건강관리 정책을 개발하고, 자살예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 개발에 투자할 것

4) 청소년보건

- 담배, 알코올, 인터넷 중독 등 건강상의 위험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교육,

캠페인을 확대할 것

- 아동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식품 판매 규제 추가 조치할 것
- 학교 교육과정 내 성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

5) 사회보장과 생활수준

- 아동복지재원 배정 관련 조항이 법률에 포함되도록 하며, 빈곤을 줄이고 아동 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평등과 형평성이 보장되도록 할 것

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와 이행과제

C. 시민권과 자유 (협약 7, 8, 13-17, 19, 37(a) 조)

1) 출생신고

- 36. 위원회는 당사국의 현 법률 및 관습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물학적 부모가 보편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데 있어 불충분하다는 것을 우려한다. 특히, 위원회는 양부모나 정부당국요원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 미혼모 관련 상황을 포함, 적절한 사법감시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실상의 입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난민, 망명희망자, 또는 비정규 이주 상태의 사람에게는 출생신고가 사실상 또는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시한다.
- 37. 협약 7조에 따라, 위원회는 당사국이 <u>부모의 법적 지위 및/또는 출신에 관계</u> 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이 신고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u>이러한 과정에서 출생신고에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가 정</u>확히 명시되도록 보장하고 이를 확인하도록 촉구한다.

□ 권고의 의미와 이행과제

- 협약 7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지야하며, 가능한 한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아야 한다. 2. 당사국은 국내법 및 관련 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국적 없는 아동의 경우 보다 특별한 보장을 해야 한다.
- 이행과제: 아동의 출생신고 관련법을 검토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이 신고되도록 하고, 출생신고에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가 정확히 명시되도록 보장할 것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38. 위원회는 당사국이 교내 의무종교교육을 금지시킨 것을 긍정적으로 보나, 실제로는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계속하 여 제한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러한 학교에 자발적으로 입학하지 않았을 수 도 있는 학생들도 포함된다는 사실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현 계획안이 종교의 다양성을 조성하는 분위기를 충분히 촉진하지 않고, 식단조건과 관 련된 사항을 비롯하여, 특정 종교를 가진 아동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제 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다.
- 39. 위원회는 당사국이 더 나아가 협약 14조 3항에 따라 실제로 그리고 모든 경우에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전적으로 존중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위원회는 또한 종교적 다양성의 존중을 촉진하고

식단조건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해 특정 종교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제약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분위기의 형성을 이러한 조치의 목적으로 삼을 것을 권고한다.

□ 권고의 의미와 이행과제

- 협약 14조 3항: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 이행과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사립학교 관련법을 검토하여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전적으로 존중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

3) 표현, 결사 및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 40. 위원회는 과거 권고사항(CRC/C/15/Add.197, para.37)에도 불구하고 <u>학교가</u> <u>여전히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u>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u>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의 참여를 배제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도시 및 농촌지역 아동들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u>
- 41. 위원회는 과거 권고안을 반복하며, 협약 12조부터 17조에 비추어 당사국이 법률, 교육부 발행 지침 및 교칙을 수정하여 아동이 의사결정 과정 및 교내 외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아동이 교내 등에서 정치활동에 참여하거나 이를 수행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누릴수 있도록 하기를 촉구한다.

□ 권고의 의미와 이행과제

- 협약 15조: 1. 당사국은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민주사회의 법체제 안에서 국가안보나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과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권리의 행사에 어떠한 제한도 가해서는 안 된다.
- 이행과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할 것

4) 체벌

- 42. 위원회는 <u>가정, 학교 및 대안돌봄 환경에서 체벌이 여전히 성행한다</u>는 과거 우려사항(CRC/C/15/Add.197, para. 38)을 반복한다.
- 43. 위원회는 과거 권고안을 다음과 같이 반복한다.
 - a)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u>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u> 과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 b) 체벌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아동 학대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대중교육 캠페인을 실시하라. 그리고 학교체벌에 대한 대안인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포함, 가정과 학교에서의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장려하라.
 - c) 체벌 피해자 아동이 체벌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

□ 권고의 의미와 이행과제

- 권고의 의미: 아동권리위원회는 과거 권고안을 반복하였음
- 이행과제

- 가정, 학교, 대안돌봄 환경 및 모든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
-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함께 권고의 이행을 위해 협력할 것

5) 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

- 44. 위원회는 당사국 내 <u>육체적, 정신적 아동학대 및 방임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u>, 이러한 학대를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제한적으로 정의되어있다는 사실을 우려와 함께 지적한다. 위원회는 또한 <u>교내 괴롭힘의 빈도와 정도가 증가</u>해왔다는 것을 우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u>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u> 설립을 환영하나, 그 <u>수가 제한적이며 재원과 인력이 불충분하다</u>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u>학대 및/또는 방임 피해자의 외상 후</u>지원 및 재활지원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우려와 함께 지적한다.
- 45.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 a) <u>아동학대 및 방임 신고자의 신원 및 안전을 고려하는 적절한 보고체계를</u> <u>마련</u>하여, 교내 괴롭힘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 아동학대 및 방임을 신고 할 법적 의무를 강화하고 확대하라.
 - b) 지역 시설을 포함, 더 많은 보호기관을 설립하고, 학대 및 또는 방임 피 해자를 위한 충분한 외상 후 지원 및 재활지원을 제공하는 등 이들이 효 과적으로 운영되는 데 필요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배정하라.
 - c)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 논평 13호(2011)를 고려하라.
- 46. 유엔사무총장의 아동폭력보고서(A/61/299)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사항을 독려한다.

- a) 아동폭력보고서 권고사항의 이행을 비롯하여, <u>성별에 특히 유념하여 아</u> 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를 우선시하라.
- b) 특히 아동폭력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가 강조한 다음의 사항을 비롯하여, 아동폭력보고서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다음 정기 보고서에 포함하라.
 - (i) <u>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국</u> 가전략의 개발
 - (ii) 모든 상황에서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의 도입
 - (iii) 자료 수집, 분석, 보급 체계 통합 및 아동폭력관련 연구의제 통합
- c) 아동폭력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세계보건기구(WHO) 및 기타 관련 기구, 특히 국제노동기구(IL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및 비정부기관 파트너와 협력하고 이들 기구의 기술적 지원을 구하라.

□ 권고의 의미와 이행과제

- 권고의 의미: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C. 시민권과 자유에서 가장 많은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음
- 이행과제
 - 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
 -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국가전

략을 개발하고, 모든 상황에서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것

D. 가정환경과 대안돌봄

(협약 5, 18(1-2), 9-11, 19-21, 25, 27(4) 및 39조)

1) 가정환경상실아동

- 47. 위원회는 요보호아동에게 가족과 같은 유형의 돌봄을 제공하려는 대한민국의 노력과 이를 위한 추가적인 시설의 건립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이러한 대안돌봄시설에 대한 평가는 오직 행정운영만을 평가하며, 보육, 보육담당자의 기술과 이들에 대한 훈련, 그리고 아동에 대한 처우의 질은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려하며 지적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이러한 시설 내학대 및 방임사건을 다루기 위한 진정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려하며, 부모와 연락이 끊긴 아동을 위한 추적제도의 부재에도 우려를 표한다.
- 48.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 a) 서비스의 질, 관련 전문가들이 아동권리 등에 대해 받는 정기적인 교육, 공립 및 사립 대안돌봄기관 내 <u>아동에게 제공되는 돌봄의 유형을 협약</u> 25조에 따라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라.
 - b) <u>대안돌봄시설 내 아동학대 관련 진정접수, 조사 및 기소제도를 보장</u>하고, 학대 피해자들이 진정절차, 상담, 진료 및 필요한 다른 회복지원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
 - c) 대안돌봄 환경 내 아동이 부모를 찾거나 부모와 연락을 유지할 수 있도

록 충분히 지원한다.

d) 2009년 11월 20일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안 A/RES/64/142에 포함된 아동 대안돌봄에 관한 지침을 충분히 고려하라.

□ 권고의 의미와 이행과제

- 협약 25조: 당사국은 아동이 보호나 신체적, 정신적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당 국에 의해 양육 지정된 경우 해당아동은 치료상황을 비롯해 양육 지정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사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 이행과제
 - 대안양육체계로서 일반위탁가정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대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가정위탁 후 사후관 리로서 위탁아동과 위탁가정에 대한 상담 등 역량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강화할 것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18개소에 불과한 가정위탁 지원센터의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

2) 입양

- 49. 위원회는 발효되면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도록 한 당사국의 입양특례법 및 민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본안이 발효되기 전 과도기간의 아동입양의 경우에 대해 염려하며, 다음의 사항에 여전히 우려를 가지고 있다.
 - a) 명시적으로 임무권한이 부여된 <u>입양관련 규제감독 중앙기구 및 주무당국</u> 이 해외입양절차에 개입할 의무를 성문화한 법률의 부재

- b) 13세 미만 아동의 입양 시 아동 의사청취의 부재
- c) <u>압도적 대다수의 청소년 미혼모의 자녀가 입양되며, 청소년 미혼모의 동</u>의 없이 이들의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이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d) <u>입양 후 서비스의 부족</u>, 특히 해외 입양아동과 생물학적 출신에 대한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겪는 언어문제 해결을 포함.
- e) 당사국이 국제입양 관련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1993년 헤이그 협약에 여전히 가입하지 않고 있음
- 50. 위원회는 <u>아동특례법이 발효되기 전 입양의 경우에도 충분하고 동일한 보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u>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u>자국의 해외입양제도가 특히 21조를 포함한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완전히 합치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u>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는 다음의 사항을 시행하도록 해외입양제도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촉구한다.
 - a) 한국 중앙입양정보원이 헤이그 협약 6조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임무권한을 규정하고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제공하라. 여기에는 입양 후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을 수 있는 해외 입양된 이들이 이러한 시설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b) 입양과정에서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견해에 적절한 중요성을 부과하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도록 하라.
 - c) <u>청소년 미혼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들의 자녀를 입양 보낼 수 있도록 하며</u>, 이러한 동의가 사실상 또는 실질적으로 강요에 인한 것이 아니도록 하라.

- d) 해외입양을 포함 모든 입양이 <u>명확한 임무권한을 가지고 사법적 감독과</u> 규제를 담당할 역량을 가진 중앙기구의 허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라.
- e) 국제입양 관련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1993년 헤이그 협약 비준을 고려하라.

□ 권고의 의미와 이행과제

- 협약 21조: 입양제도를 인정하는 당사국은입양제도를 인정하는 당사국은 아 동의 이익이 가장 먼저 고려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또한
 - 가. 아동의 입양은 적용 가능한 법과 절차에 따라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정보에 기초해 이루어져야 하며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허가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관계당국은 부모나 친척, 후견인과 관련된 아동의 신분상태를 고려해 입양의 허용여부와 필요한 경우 부모나 친척 등 관계자들이 협의해 입양에 대한 분별 있는 동의를 했는가 하는 점을 결정한다.
 - 나. 해외입양은 아동이 위탁양육자나 입양가족을 구하지 못했거나 모국에서 는 적절한 방법으로 양육될 수 없는 경우 아동양육의 대체수단으로 고려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 다. 해외입양아가 국내입양아에게 적용되는 보호와 기준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라. 해외입양의 경우 양육지정이 입양관계자들에게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마. 적절한 상황이 되면 양자 또는 다자간 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해 이 조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그러한 체제 안에서 아동에 대한 해외에서의 양육지 정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이행과제

- •국제입양 관련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1993년 헤이그 협약 비준을 고려할 것
- 국내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입양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등을 포함해 입양을 요하는 아동이 국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중앙입양정보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마련하고, 입양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할 것

E.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협약 6, 18(3), 23, 24, 26 및 27(1-3)조)

1) 장애아동

- 51. 위원회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u>장애아동에 대한 정부지원이 저소득층 가정에만 제공되고, 물리치료 및 직업훈련 관련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u>장애아동, 특히 여성장애아동이 교육을 받는 데 있어 겪는 어려움</u>, 특수교육 교사와 감독관의 부족, 그리고 장애아동의 대부분이 장애가 없는 아동들과 분리되어 특수학교나 학급에서 교육받는다는 사실을 우려한다.</u>
- 5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2006년 채택된 장애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 반논평 9호(CRC/C/GC/9)를 고려하고 다음의 사항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a) 모든 장애아동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라.

- b) <u>장애아동의 교육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u>, 장애아동이 교육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u>특수교사의 수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며</u> 교사와 감독관에 적절한 교육연수를 제공하는 조치를 더욱 강화하라.
- c) <u>장애인등에관한특수교육법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행하며, 이를 위해 무</u> 엇보다도 충분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라.
- d) 가능한 경우 장애아동이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 권고의 의미 및 이행과제

- 권고의 의미: 아동권리위원회를 장애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많은 수의 권고 를 제시함
- 이행과제
 - 장애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할 것
 - 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등에관한특 수교육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

2) 건강 및 보건 서비스

53. 위원회는 당사국이 보건예산을 증액하고 건강보험 제공을 위해 특별예산을 배정한 것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또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의료수급자 지원사업, 공공 금연캠페인, 그리고 영유아 건강 검진 및 예방접종을 강화하려는 당사국의 노력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증액에도 불구하고 <u>총예산 대비 보건예산 비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대형병원과 소규모 지역병원 간에 소아과 진료 및 응급진료의 가용성과 진료수준에 격차가 있다</u>는 점을 우려한다.

54. 위원회는 당사국에 <u>보건예산을 상당수준 늘리고, 저소득 가정이 무상으로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 의료시설 체계를 구축하라</u>는 과거 권고 안(CRC/C/15/Add.197, para. 49(a))을 반복한다. 또한 전 지역에 소아과 진료 및 응급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u>중소 지역병원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인</u>적 자원 지원을 늘리는 조치를 이행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 권고의 의미 및 이행과제

- 권고의 의미: 아동권리위원회는 과거 권고안을 반복하였음
- 이행과제
 - 저소득 가정이 무상으로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 의료시설 체 계를 구축할 것
 - 중소 지역병원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인적 자원 지원을 늘리는 조치를 이행할 것

3) 정신건강

- 55. 위원회는 특히 전국에 걸쳐 32개의 정신보건센터를 설립하는 등 아동의 정신 건강을 증진하려는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내 전반적 인 아동정신건강상태가 악화되었고, 아동, 특히 여아의 우울증 비율과 자살률이 증가해왔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u>자살위험자 조기</u> 발견과 자살방지를 위한 진단검사를 도입한 것에 주목하나, 이러한 진단검사가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한다.
- 56. 위원회는 당사국이 <u>아동 우울증 및 자살 근본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기</u> 반하여 아동정신건강관리 정책을 개발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자살행동, 특히 여아의 자살행동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활동과 외래 및 입원환자 정신보건서비스를 포함하는 <u>종합적인서비스 시스템 개발에 투자</u>하도록 권고하며, 이러한 상황에 놓인 아동의 시설수용은 최대한 피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u>자살위험감지 및 자살방지를 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및 충분히 상의할</u>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보장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 정신건강접근법에 추가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이를 대체하여 자살관련 사회적, 가정적 요소를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 권고의 의미 및 이행과제

- 권고의 의미: 우리나라에서 최근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자살에 대해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많은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함
- 이행과제
 - 아동의 정신건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기초로 하여 국가 차원의 아동정 신건강관리정책을 개발하고, 아동의 정신건강의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서 비스 시스템 개발에 투자할 것
 - 자살위험감지 및 자살방지를 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및 충분히 상의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보장 조치를 마련할 것

4) 청소년 보건

57. 위원회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 가공, 수입, 유통, 판매하는 자에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

간광고에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동이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에서 비롯된 비만 및 여타 건강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아동과 청소년의 흡연율과 음주율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고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에 우려를 표시한다.

- 58. 더 나아가, 위원회는 의무 성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안들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성 및 생식 보건에 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교내 교육이 여전히 부족함을 우려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원회는 계획되지 않은청소년 임신율이 높고 이에 따라 이런 상황에서의 <u>낙태율 역시 높다</u>는 사실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한다.
- 59. 위원회는 담배, 알코올 및 인터넷 중독이 야기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언론 등을 통해 정보 및 교육캠페인을 늘릴 것을 대한민국에 촉구한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캠페인이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생활 양식을 유지하고 균형 잡힌 소비 습관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 개발을 돕도록 하며, 아동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식품의 판매를 규제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독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학교 교육과정 내 성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권고의 의미 및 이행과제

- 권고의 의미: 아동과 청소년의 흡연, 음주, 인터넷 중독, 낙태 등 아동과 청소 년의 보건에 관련된 광범위한 권고안을 다양하게 제시하였음

- 이행과제

- 위의 권고안을 이행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아동 업무 담당)와 여성가족부 (청소년 업무 담당)의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함
- 담배, 알코올 및 인터넷 중독이 야기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언론 등을 통해 정보 및 교육캠페인을 늘릴 것
- 학교 교육과정 내 성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

5) 사회보장과 생활수준

- 60. 위원회는 헌법 제34조 3, 4, 5항에 따라 여성, 노인 및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 하려는 당사국의 계획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u>대한민국 헌법에 아동</u> 복지증진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우려한다.
- 61. 위원회는 적절한 수준에서 <u>구체적이고 의무적인 아동복지재원 배정관련 조항이 법률에 포함되도록 당사국이 법 개정을 고려할 것</u>을 촉구한다. 당사국은 <u>빈곤을 줄이고 모든 아동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평등과 형평성이 보장되도록</u> 해야 한다.

□ 권고의 의미 및 이행과제

-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는 사회보장 ·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이행과제

- 헌법 제34조 4항을 '국가는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로 수정할 것
- 구체적이고 의무적인 아동복지재원 배정관련 조항이 법률에 포함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
- 빈곤을 줄이고 모든 아동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평등과 형평성이 보장되도록 할 것

4. 정부 이행방안을 위한 제언

1) 아동관련 부처의 통합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제1조에서 "아동이라 함은 해당 아동법규에 의하여 미리성년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3·4차 유엔권고문에서는 2008년 이래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작동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동과 청소년 정책이 개별부처로 이해되어 정책의분열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면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복구하고 강화하거나 가급적 권위와 적절한 인적자원을 갖춘 적합한 기구를 설립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라고 권고하였다.

본 발제자는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아동정책이 아동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청소년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와 아동권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기본법을 중심으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정책, 청소년활동진흥, 청소년자립지원, 청소년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유엔의 아동권리협약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문을 이행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업무가 보건복지부를 통합되는 것이 반드시필요하다. 아울러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과같이 아동과 청소년에 관련된 모든 법률들을 아동관련 법률로 통합하고, 아동과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아동정책으로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아동 예산의 증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조는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아동을 위한 예산 할당이 하위에 머물고 있다.

2011년 보건복지부의 분야별 세출 예산은 <표 1>과 같다. 2011년 보건복지부 총예산 20,940,663백만원 중 아동·장애인 등의 예산은 1,046,026백만원으로 총 예산의 5.1%에 불구하다. 이에 반해 노인의 예산이 3,714,510백만원으로 총 예산의 1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나마 아동·장애인 예산 중 아동 관련 예산은 방과후돌봄서비스 977억원,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372억원, 아동안전지킴이 72억원, 가정입양지원 113억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보조 73억원으로 1.607억원에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로 이관된 아동관련 예산도 존재하지만,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에서도 아동 관련 예산은 노인

이나 장애인 관련 예산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아동 관련하여 사용되는 예산과 사용되는 항목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유엔아동권리위 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아동관련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실효성 있는 아동복지정책이 실행되기 위한 아동복지 예산의 획기적 중액이 반드시 필요하고,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인 GDP 대비 아동복지 예산을 2.3% 이상으로 증대되어야 한다.

〈표 1〉 2011년 보건복지부 분야별 세출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10예산	'11예산	증감	
1	(A)	(B)	(B-A)	%
총 계 (A+B)	19,816,635	20,940,663	1,124,028	5.7
□ 총 지 출(A)	19,473,580	20,692,179	1,218,599	6.3
ㅇ 사회복지	14,275,740	15,315,372	1,039,632	7.3
- 기초생활보장	7,286,456	7,516,784	230,328	3.2
- 아동·장애인 등	880,784	1,046,026	165,242	18.8
- 공적연금	395	387	△8	△2.0
- 보육 및 저출산	2,159,819	2,510,736	350,917	16.2
- 노인	3,500,668	3,714,510	213,842	6.1
- 사회복지일반	447,618	526,929	79,311	17.7
ㅇ 보 건	5,197,840	5,376,807	178,967	3.4
- 보건의료	878,289	729,665	△148,624	△16.9
- 건강보험	4,319,551	4,647,142	327,591	7.6
□ 내부거래(B)	343,055	248,484	△94,571	△27.6
ㅇ 회계,계정간거래	115,211	42,810	△72,401	△62.8
ㅇ 기금전출금	227,844	205,674	△22,170	△9.7
※ 별도 통계				
- 인 건 비	253,826	261,524	7,698	3.0
- 기본경비	33,184	33,650	466	1.4

지정토론

- 김 인 숙 유엔 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사무국장
- 김 형 욱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 강 현 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 김 정 숙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정 진 현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차 유 진 법무부 인권정책과

토론문

김 인 숙 (유엔 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사무국장)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1년 9월 한국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 3/4차 보고서 심의 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 부터 받은 최종견해의 평가 및 이행전략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한국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함으로 당사국이 된 이래, 20여년이 지났다. 속도는 느리지만, 한국사회는 정부를 포함한 민간단체,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모두 한국사회의 인권증진을 향하여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 왔다. 특히유엔아동권리협약 제 3/4차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과 민간보고서 작성 과정, 그리고 민간단체의 사전회의(Pre-session) 참석 및 논의, 국가보고서 심의 등 일련의 과정을 지켜볼 때,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한국 의무부담자들의 각별한 노력의 흔적들을 볼 수 있다. 특히 민간단체들은 장기간 성실한 자세로 민간보고서작성에 임했고,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아동보고서도 함께 제출 하였다. 특히 2011년 3/4차 국가보고서 심의 시 한국의 신생 민간단체가 출선하여 국가심의과정을 웹케스팅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달하는 역사적인 일도 이루어 졌다. 이러한 일련의활동들이 한국사회의 인권문화 조성에 기여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본 토론문은 발제자들의 발표에 대한 이의 제기나 논평, 혹은 쟁점을 찾아 토론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았다. 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의 내용은 이미 알려지고 공유 된 바이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권고를 받았느냐가아니라 앞으로 한국 사회가 보다 적극적인 협약 이행을 위하여 어떤 전략을 모색할 것인가에 있다. 이것이 우리의 당면 과제이다. 토론자는 오늘 이곳이 발제자나토론자가 함께 전략모색의 방향을 찾아나가는 유익한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 조금은 생각이나 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겠으나, 협약이행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그 해결점을 모색하는 것이 아동권리에 기반 한 접근이 될 것이다.

본 토론자는 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민간보고서를 작성한 집필진의 한 사람으로, 민간단체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의 협약이행 전략에 대해 간단하게 몇 가지로 생각을 요약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한국 사회에서 "인권"이 새 천년의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인권의 실현, 즉 인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 인권문화조성 에는 아직 많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아동의 권리 실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제사회는 한국사회를 향해 반복되는 권고를 보내며 문제제기를 하지만, 그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결정자들이 아동인권이슈에 대해 관심이나 의지가 부족한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이제는 반복된 권고문을 이행할 전략을 세워야 한다. 협약 이행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연관된 여러 다른 부처들의 협력, 민간단체들과 정부의 협력, 그리고 정부와 민간단체가 권고문을 전략적으로 이행할 수 있

도록 감시하고 지원하도록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두 함께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협약이행 전략 수립 시시급하게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사안을 제안한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분과위원회 설립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통한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제반 활동을 독립적으로, 실효성 있게. 그리고 전문적으로 감독, 보호, 증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협약 일반논평 제 2호)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일반논평 2호 (2002)를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지속성 및 아동권리 관련 전문성을 위한 적절한환경제공을 촉구하였음을 유년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조처가 이행 될 경우 한국정부가 지속적인 권고를 받아온 또 하나의 이슈인 소정의 권한과 인적 물적 자원을기반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 "공적기관에 의한 모니터링"관련 권고 사항이나 옴부즈퍼슨 제도에 대한 사안에 해결의 실마리를 줄 수 있다.

둘째,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복구 및 기능 강화

1, 2차 권고에 이어, 3/4차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받을 때도 한국정부는 아동정 책조정위원회의 존재 자체와 기능과 역할에 대한 집요한 질문을 받았다. 이는 국 제사회가 한국정부의 협약이행의 의지를 확인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아동권리증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아동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해결되지 않는 많은 이동권리이슈를 풀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아동정책조정의원회의 복구와 기능의 강화는 모든 문제해결안에 선행되어야할 과제이다.

셋째, 아동권리에 기반 한 "협약이행 국가행동계획" (National Action Plan)의 수립

아동권리의 준거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다. 협약이행을 심의 받은 후 받은 최종 견해는 당사국의 "아동권리이행의 현 상태"로 평가할 수 있다. 향후 2017년 에 제 출하게 될 보고서는 2011년에 10월 6일 공개된 최종견해내용을 기반으로 국가행 동계획을 수립하고, 공적기관에 의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권리를 보호 하고 존중하며 충족시키는 전반적인 활동을 장기적으로 계획하여 단계적으로 수 행하는 과정을 담아 작성될 수 있다.

넷째, 자원할당의 증대 및 자원 활용의 모니터링과 분석

한국정부는 요보호 아동 중심의 복지에서 보편적인 아동복지로 발전됨을 주창한다. 그러나 복지예산에서 아동에게 할당되는 자원을 살펴보면 아동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는 아직 초보단계로 평가된다. 시설아동, 보육대상아동, 초등교육과정의아동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아동예산의 규모가 큰 것으로 설명되지만, 선진국의예산규모는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에 대한 예산을 말하고 있기에, 한국이 OECD국가들 중 아동을 위한 예산 할당이 여전히 하위에 머물고 있다.

국가예산 수립에 아동권리접근법 활용과아동을 위한 자원이 배분 및 사용을 추적하는 체계 도입, 분야별 투자가 어떻게 아동최선의이익에 부합하는지, 자원배정의 효과를 삼사 및 측정할 수 있도록 결과에 기반한 예산수립의 도모를 권고하는 위원회의 견해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일반원칙의 이행 위한 정부의 통합과 조정 능력 강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의 협약이행을 심의할 때 8개 부문으로 나누어 모

니터링을 하고 분석하여 심의한다. 그 8개 부문 중 무엇보다 중요한 부문이 "일반 원칙의 이행"이다.

'비차별의 원칙' '생명권, 생존 및 발달의 원칙', '아동최선이익의 원칙' '아동견 해존중의 원칙'을 당사국이 어떻게 이행하는지 가 위원회의 가장 큰 관심이라 생각한다. 4개의 일반원칙은 협약이 천명하고 있는 4개의 기본권 (생존, 보호,발달,참여권)을 모두 포괄한다. 당사국의 일반원칙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적용이 협약이행의 핵심 이다. 일반원칙은 아동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법률, 행정, 사법절차, 국가의 아동정책, 아동인권에 기반 한 사업 (CRBP), 기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 체계구축 등에 기본적으로 적용 되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이부분에서 한국정부가 미흡함을 우려한다.

즉 <<일반원칙 이행과 관련하여 정부는 통합과 적용의 미흡함을 지적한다. 일 반원칙이 정부의 정치적 결단, 행정체계, 사법체계, 사회개발, 복지서비스전달 등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결정 및 실천과정에 연계, 통합, 적용되지 못하고 있 다.>> (3/4차 민간보고서, 2010)

여섯째, 인권교육/훈련의 제도화

협약에 대한 인식, 홍보 의 부족 과 인권교육의 부족 문제는 한국정부가 지속적으로 권고 받은 문제 중 하나이다. 이 사안 역시 정부, 민간단체, 인권위원회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반원칙의 이행 미흡 등, 모든 권고문의 근본이유로 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 이해부족, 지식 부족, 훈련 부족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할 사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법 제정 노력은 매우 고무적이다. 지 난 2011년 12월에 채택 된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 (UN Human Rights Education Training Declaration) 은 앞으로 한국정부가 인권교육 활성화에 지침으로 삼아야 할 국제적인 지침이 되리라 기대한다. 특히 지금까지 인권을 알고 배우는 "인권교육"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부터는 인권을 배우고 인권에 대하여 배울 뿐 아니라인권을 통해서 배우는, 인식의 변화, 시각의 변화. 태도의 변화를 가능케 하는 '훈련"에 중점 둔 인권교육훈련의 전략이 수립되고 제도화 되어 실현 가능해 져야 할것이다.

일곱 번째, 국제협력 증진

위원회의 모니터링 체계 중 마지막 부문에 해당하는 특별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문제는 국내 부처 간 뿐 아니라 국경을 넘어 조정하고 협력하고 통합하는 기술이 요청되는 부문이다. 그동안 각국의 당사국들의 협약이행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매 우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여 협약 선택의정서를 채택하게 된, 아동매매, 성매매, 아 동 포르노 등의 문제나, 이주노동자 가정의 아동,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난민가정 의 자녀, 탈북가정의 자녀의 문제 등은 국경을 넘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 들인 경우가 많다.

더구나 한국정부는 최근 경제대국중 하나로 부상하면서 국가의 위상에 걸 맞는 국제협력개발사업을 위한 공적자금의 증대를 요구받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10년에 OECD/DAC에 회원국이 되었고, 사상최초로 원조규모가 10억 달라 를 넘어섰다. 2015년 ODA/GNI 0.25%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수년 내에 한국의 해외원조규모가 30억 달라 에 달할 가능성을 말한다. 이러한 해외원조액 규모의 증대는 해외원조 사업의 질의 향상을 강하게 요청한다. 협약이행에 있어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까닭은 해외 다른 나라들과 협력사업을 기획 할 경우 그 나라의 아동의 다양한 문제들을 아동권리에 기반 접근의 개발협력사업을 통하여 국제적인 이슈들을 함께 풀어나가도록 권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정부가협약의 당사국이 된 이래 지난 20억 년간 노력하지 못한 채 간과된 사안으로서,

향후 협약이행 전략 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부분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은 우리 모두의 책임 이다. 당사국인 정부와, 국제기구, 민간단체, 그리고 아동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보내온 권고를 이행 함에 있어서, 다양한 아동권리 이슈들에 대한 이행 전략에 앞서, 다양한 아동의 문제 발생의 현상적 접근이 아닌, 근본 이유즉 아동인권침해의 뿌리 깊은 원인을 먼저 찾아 그 해결점을 찾는 것이 협약이행 에 대한 권고문을 이행하는데 선결 과제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토론자는 위에 제안하는 7개 사안을 전략수립의 우선과제로 선택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핵심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일반원칙의 이행"을 기본으로 삼고 "아동인권에 기반 한" 접근 방법으로, "아동최선이익의 원칙"을 기조로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방안을 제안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권고가 정부에 던진 메시지

김 형 욱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권고의 의미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23주년, 국내비준 21주년,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진전된 상황이 있는 반면에, 협약이행에 대한 국가적 노력이 풍화를 겪으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한 부분은 없었는지 조금은 우려스럽다. 세계인권선언 이후, 인권사회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와 당사국의 노력, 특히 인권의주체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단순히 선언적 권리규범이 아닌, 실천해야하는 권리규범으로 국제사회에 등장했다.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는, 특히 협약의 권리규범은 국내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의 원칙으로 작용해야 하며, 이를 통한 제도적 보장과 함께, 모든 영역에서 아동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종권고는 국제사회가 협약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기준이 된다. 따라서 최종권고는 자국의 권고내용만이 아닌, 타국의 권고내용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은 최종권고 이전의 심의과정이 제출된 자료에 국한한 것이므로 누락되거나 논의가 미흡한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는 인권규약 위원회의 우려 및권고내용과도 비교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능동적 자세는 아동인권보장의 내용

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검증 및 심의를 통한 최종권고는 한국사회가 협약이행을 위해 해야 하는 실천적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5·6차 국가보고서는 2017년 6월 19일까지 제출).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규정과 협약 당사국의 의무이다.

2. 협약이행을 위한 정부 노력의 반성적 성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민법을 비롯하여 교육 및 복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학교폭력 등 아동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이 긍정적 평가를 받은 이유는 개정내용이 협약의 취지와 규정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약이행을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 제도를 만들었지만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되지 못한 것도 있으며, 한편에서는 협약에 반한 규정도 존재하고 있으며(예, 촉법소년 규정), 협약의 규범내용은 사법기관에서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의 사법기관에 대한 의견제출 기능 제외). 또한 아동, 특히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노력은 아직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한편에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역풍이 불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아동에 대한 폭력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권리를 제한하고 유보하는 것이 현실에서는 설득력이 있는 분위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과연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아동권리실현에 얼마만큼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이번 권고에서도 이전 권고와 마찬가지로 반복된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은주 교수님의 지적과 같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지속적인 이행을 권고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아동인권이 여전히 미흡함」을 알 수 있으며, 정부의 성실한 이행 노력 의지가 더욱 확인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유 엔아동권리위원회의 협약이행에 관한 심의 및 권고 제도 자체가 기능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와 같이 최종권고에 대한 의미와 구속력에 대한 인식 및 의미를 확인하는 자리가 각 정부부처별로 시민사회와 연계하여 실시되었 으면 하는 마음 가절하다.

3.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주요 쟁점과 과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권고를 바탕으로 협약 이행을 위한 당면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아동인권실현을 위한 포괄적 법률 제정 및 국내 관련 법률의 전면 검토
- 협약 이행을 효과적·통합적으로 조정·추진할 수 있는 정부조직 운영의 내 실화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강화
- 아동인권 상황 모니터링 및 이행 현황 점검
- 아동 친화적인 인권상담 및 구제시스템 구축
-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예산에 대한 검토
- 아동인권상황 및 아동정책에 관한 데이터 확보 및 관리
-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및 연수, 홍보 활동의 지속적인 추진

하지만 이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협약 주무부처로서 보건복지부의 역할과 기능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인권기구로서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도록 직제 확대 및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인권침해 상황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공적 상담 및 구제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정비되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이은주 교수님 발제문의 협약 평가 및 이행전략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코자 한다.

가. 협약 주무부처로서 보건복지부의 역할과 모니터링

협약 이행은 교육, 복지, 소년사법 등 거의 모든 부처를 망라한다. 각 부처별로 협약 이행을 위한 노력과 점검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를 보다 효과적이고 통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 역할을 보건복지부가 맡았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에도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동법 시행령에는 협약이행 업무를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애초부터 협약이행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에 대한 검토 미흡, 이로 인해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유명무실화된 점을 지적하고 싶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역할은 시기에 맞게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복지영역에서 협약과 관련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 국한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협약 이행의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부처를 망라한 아동정책을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가 조정되고 점검될 수 있는 아동정책 조정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심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난 최종권고와 달리 새롭게 제기된 이슈들(아동권리와 재계 등)에 대한 이행을 위해서도 보건복지부의 역할은 해당 부처와 상호협력하면서 추진을 독려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역할수행은 어떤 기관 및 단체에 위탁되어 운영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보건복지부라는 정부조직 내에 실질적인 협약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력과 권한,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2006년 10월부터 운영되어현재는 다른 기관으로의 위탁이 검토 중인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또한 운영상의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내 정책모니터링의 역할과 권한이 부여받은 조직에서 범정 부적인 정책을 개발·공유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연구위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 조직은 정기적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또는 아동정책실 무위원회에 보고되고 점검되어야 한다. 즉 보건복지부 내 조직 개편을 통하여 아 동인권 또는 아동정책 분야에 식견이 있는 별도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부서 또는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협약이행 관련 업무의 위탁은 근본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 국가차원의 협약 이행 모니터링이 아무런 권한도 없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되어 수동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동인권 실현에 결코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 정책 모니터링 기능과는 명확하게 구별된다.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 기능 강화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행정부처의 노력과는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 모니터링 기능은 강화되어야 한다. 인권홍보 및 교육을 비롯하여 인권상담 및 구 제를 통한 인권침해 상황 개선과 정책 및 제도개선 권고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핵 심이다. 또한 협약이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의 이행 상황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모니터링이 효과적이다. 협약 이행 상황이 보건복지부에 서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의 검증과정이 효 율적이다. 그렇다고 정부부처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적대적이거나 추궁 또는 비난 의 관계가 설정되어서는 안 된다. 상호보완 및 협력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파트 너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보건복지부가 협약 이행 모니터링 조직을 마련하고, 국가인 권위원회도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하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조직 개편을 위한 내부적인 논의 와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는 예산이 수반 되는 직제가 확대 운영되어야 하지만, 직제를 개편하여 인력을 충원한다거나 사업 을 확대하기에는 권한도 없을뿐더러, 타 부처(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와의 합 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앞서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예산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국가아동정책의 이념과 철학으로 삼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제도가 있다하더라도 입법조치가 수반하지 않으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입법조치가 수반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관련 조직 개편과 예산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좋은 정책이나 제도라 할 수없으며, 결코 아동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없다.

강 현 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김형모 교수의 의견에 전체적으로 동감하며 권고이행을 위한 방안을 몇 가지 보충하고자 한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가정, 학교 및 대안양육환경에서의 체벌에 대해 우려를 표시: 학교에서의 체벌 뿐 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체벌에 대해 부모교육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사회인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 아동 체벌에 대한 찬반 논란은 지속될 것이다. 또한 대안양육환경, 예를 들어 최근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보육시설의 체벌 현황에 대한 파악과 교사의 인식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 위원회는 육체적, 정신적 아동학대 및 방임 발생의 증가와 교내괴롭힘 증가 우려: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 및 사회전반의 문제인식은 높아졌으나 아직까지 아동방임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부족하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현실적 방안 모색을 위하여 학생들과 교사의 의견을 보다 더 청취해야 할 것이다. 아동에 대한 폭력방지를 위한 법 개정도 필요하겠지만 여기에는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위원회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대안돌봄시설에 대한 평가가 행정운영에 치우친점을 우려: 대안양육에 대한 평가 내용에 아동에 대한 서비스 및 치료와 아동권리 보장 부분을 대폭 포함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 이는 평가 수행의어려움과 대안양육기관 종사자들의 반발로 인해 실행이 힘든 경우가 많다. 객관적이면서도 평가가 용이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개발과 서비스의 내용을 잘알고 있는 평가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위원회는 요보호아동이 부모를 찾거나 부모와 연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 히 지원하라고 권고: 현재 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등 대안양육서비스에서 친부모만남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은 주요 평가 부분으로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이것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친부모의 연락두절이나 실종에 대해 민간기관에서는 개입할 방법이 없다. 적어도 요보호아동의 경우는 정부가 친권에 개입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이 친부모와 만나는 경우 일시적인 정서행동적 어려움을 표출하거나 부모를 만나지 못하는 다른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어 민간기관에서 이를 꺼리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만남 프로그램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부모만남은 아동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마음의 준비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일정을 알려줘야 하며 일관된 계획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예를 들어 아동학대 등의 사례인 경우)는 사회복지사 등이 동석하는 만남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 위원회는 대안돌봄 시설 내 아동학대 관련 진정접수, 조사 및 기소제도 보장 하라고 권고: 시설 및 가정위탁 등의 대안양육시스템의 운영에 대해 모니터링

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대안양육시스템과 관련하여 한 가지 추가할 사항은 외국국적의 아동들이나 다 문화가정의 아동이 점차 이 시스템에 유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그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아동복지법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실무자들의 다문화감수성 향상을 위한 실천현장에서의 준비 도 수반되어야 한다.

입양

- 입양과 관련해서는 민간기관의 노력보다는 정부의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입양 비율을 무조건 늘리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입양과정에 대한 정부와 사법부의 보다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정식 입양절차를 밟지 않고 친자로 입적시키는 관행을 바꿔나가야 한다. 모든 입양은 법적절차를 밟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며, 파양과정에서 아동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 위원회는 담배, 알코올 및 인터넷 중독의 위험을 우려하며 교육캠페인의 확대를 권고: 최근 인터넷 중독 뿐 만 아니라 유아들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도 캠페인에 포함해야 한다.

그 외 김형모교수의 부처 통합과 예산 증대에 대한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며 몇 가지 의견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아동 예산은 지방이양된 경우가 매 우 많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항목에 얼마나 아동예산을 투입하고 있는지 구 체적으로 파악된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이양된 아동예산의 규모와 항목에 대한 조사관리를 해야 할 것이며 국고 및 보조금 투입을 하는 만큼 지방정부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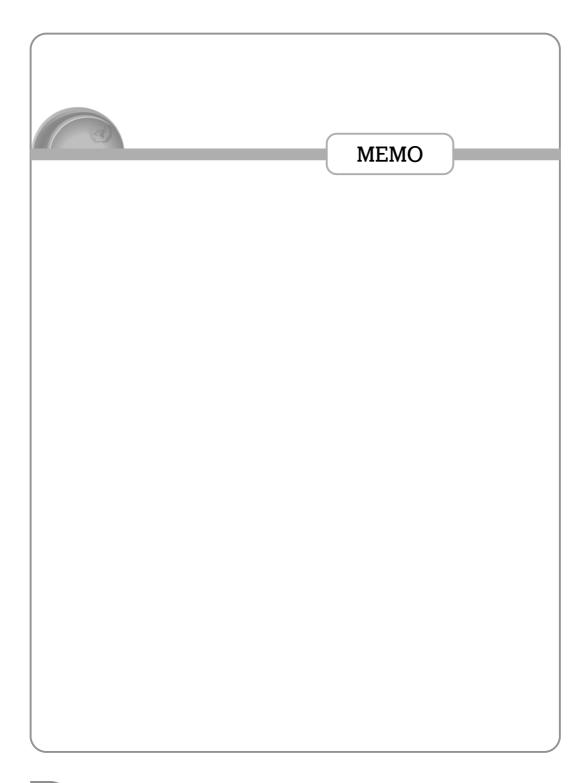
김영지박사의 자료도 최근 아동권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이슈들을 잘 짚어주고 있다.

그중 특히 관심 있게 본 내용은 인권위 내 아동권리 소위원회 설립이라든지, 독립모니터링 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아동권리를 다루는 별도의 조직이 없다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증거이다. 정부의 미미한 아동예산과 아동관련 통계 및 데이터의 부족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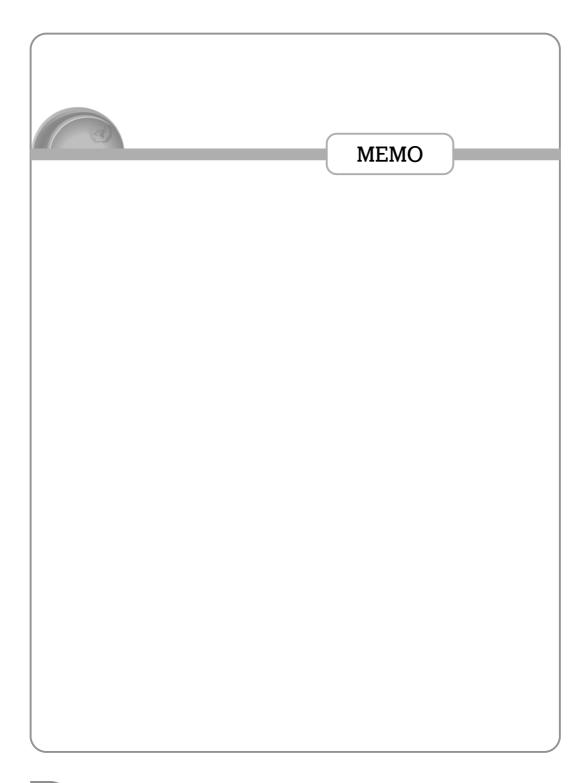
김영지 박사가 지적한 아동예산의 측정 방법의 체계화 필요성 부분은 절실히 동감하는 바이다. 아동예산, 혹은 아동복지예산의 범위와 그 계산 기준이 모호하고, 그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미비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아동성과분석 혹은 아동복지 비용효과분석은 요원한 얘기일 수밖에 없다.

데이터 관련해서는 최근 많은 연구소 및 단체에서 아동관련 통계와 데이터를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이것들이 좀 더 연계되고 체계있게 구축되어야 한다는 김영지 박사의 지적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여기에 덧붙이면 요보호아동 및 대안양육체계에 있는 아동에 대한 데이터도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언제 요보호체계에 들어왔는지, 친가정 복귀를 했는지, 다른 보호유형으로 배치형태를 바꾸었는지 등의 기본적 자료가 파악이 되어야 한다.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전체적으로 요보호아동의 개인별 배치상황과 그 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아동의보호유형이 변화하면 추적하기는 더욱 어렵다.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정보의 파악은 필수적이다.

김 정 숙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정 진 현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차 유 진 (법무부 인권정책과)

1.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법무부 이행조치 계획

□ 입양 관련

- 아동입양허가제 도입에 따른 아동권리협약 제21조(a)항 유보철회
 - 2012년 2월 10일 「민법」1)을 개정하여 아동 입양에 가정법원이 관여하도록 하고 아동 복리에 반할 경우 입양허가신청을 기각하도록 함(2013년 7월 1일 시행)
 - 2013년 7월 1일 개정『민법』시행 이후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1조(a)항 유 보철회 예정
- 입양대락 연령 하향화
 - 2012년 2월 10일 「민법」²)을 개정하여 입양대락 연령 하향(15세 ⇒ 13

¹⁾ 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2.10]

²⁾ 민법 제869조(입양의 의사표시) ①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세)(2013년 7월 1일 시행)

- 2013년 상반기 중「가사소송법」,「가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을 개정하여 입양절차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의견청취 규정을 마련할 예정
- 해외입양을 포함한 모든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 도입
 - 2011년 8월 4일 전부개정한 「입양특례법」3)(2012년 8월 5일 시행)과 2012년 2월 10일 개정된 민법(2013년 7월 1일 시행)에 따라 모든 아동의 입양에 대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게 될 예정임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법무부는 2011년 12월에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이 종료됨에 따라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의 수립을 추진 중임
 -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안을 제시받아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 ②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전문개정 2012.2.10] 3) 입양특례법 제11조(가정법원의 허가) ① 제9조에서 정한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 2. 제9조 및 제10조의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
 - 3.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입양동의 서류
 - 4.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양친이 될 사람의 입양의 동기와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국내에서의 국외입양) 국내에서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양자로 하려는 외국인은 후견인과 함께 양자로 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양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 2. 양자가 될 사람이 제9조의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
-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
- 4.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입양동의 서류

제19조(외국에서의 국외입양) ① 외국인으로부터 입양알선을 의뢰받은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알선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해외이주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현재 초안을 작성중이고 2012년 3월 14일 개최될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청회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3월말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확정될 것임

-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 보고서 심의 후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2007년 5월 이후의 유엔 인권조약기 구의 권고를 영역 및 소관부처·기관별로 분류·배포하여 핵심추진과제 개발 시 인권조약기구의 권고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함

□ 차별금지법 제정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부담 완화 방안 등에 관한 검토 지속
 - 법무부는 2007년 5월 제17대 국회 회기만료로 「차별금지법안」이 폐기된 이후, 차별 관련 국내법과 해외 입법례 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차별금 지법안」의 제정 추진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하여 재검토
 - 2008년과 2009년 2차례에 걸쳐 T/F 운영
 - 2010년 전문가, 이해당사자, 관계부처 공무원 등 19명으로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
 - 2011년 11월 9일 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차별금지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고 권영길의원 대표발의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예정임
 - 제18대 국회 회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된 후 제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 추진방안에 관하여 검토 중

□ 법무·검찰공무원 등에 대한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교육 실시

- 소년보호기관의 보호소년, 위탁소년⁴⁾ 등을 위해서 일하는 각종 전문단체 및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교육 실시
- 법무·검찰공무원에 대한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교육 실시
 - 소년보호공무원 대상 인권감수성훈련 강의 시 아동권리협약 내용을 반영 ※ 2008년 4회 100명, 2009년 4회 98명, 2010년 4회 77명, 2011년 3회 93명 교육 실시
 - 아동권리협약의 내용 및 이행조치 등을 소개한 소년보호기관 자체 교육용 인권교재를 개발하여 2009년 8월 17개 소년보호기관에 배포하여 교육을 실시함
 - 인권감수성훈련의 경우 2012년 6회 180명 이상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
 -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 포함된 동영상 등 인권교육 자료개발 예정
 - 소년보호시설 실태조사 시 인권교육을 병행 추진할 예정 ※ 2012년 11개 소년보호시설 점검 예정
 - 2014년부터 보호직(소년보호) 교육 중 보호직 신규자, 소년보호교사역량개 발 등 과정을 운영할 때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
 -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소년보호공무원에 대한 아동권리협약 교육에 관하여 반영할 예정

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임무) ① 소년원은 「소년법」제32조제1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로부터 송치된 소년 (이하 "보호소년"이라 한다)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② 소년분류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이하 "위탁소년"이라 한다)의 수용과 분류심사

□ 입양 및 수사·재판절차에서의 아동 진술권 촉진

- 입양절차에서 아동의 의견청취 규정 마련
 - 2013년 상반기 중「가사소송법」,「가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을 개정하여 입양절차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의견 청취 규정을 마련할 예정

○ 법률조력인 제도 도입

- 2011년 9월 15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법률조력 인 제도 도입,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 예정
- 자기주장과 방어능력이 취약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해 검사가 법률조력인(국선변호인)을 지정, 법률조력인은 수사 및 재판과 정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대변하고 법률적 지원을 제공함
- 2012년 2월 8월 대한변협과 MOU 체결, 공동으로 법률조력인 교육 실시
- 2012월 2월 5월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 관련 홍보
- 2012년 3월 16일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
- 2012년 11월 12월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 평가 예정

○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예정

- 2013년 경부터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예정
-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의 경우 자기주장과 진술능력이 취약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아동 및 장애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관련 전문가를 진술조력인으로 충원하여 수사·재판기관과 피해자간에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피해자의 진술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및 법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2012년 1월 3월 진술조력인 도입 관련 연구용역 실시

- 2012년 5월 진술조력인 도입에 관한 공청회 실시
- 2012년 7월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관련법 개정안 마련
- 2012년 12월 관련법 국회 제출

□ 난민아동 및 이주노동자 아동

- 난민아동 및 망명희망자 자녀와 가족에게 재정적, 교육적 및 사회적 지원 제공
 -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난민신청자의 아이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외국인등록 가능
 - 「난민법」제정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난민신청자와 가족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취업허가, 초·중등교육, 의료지원 및 주거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임
 - 난민신청자는 2013년 6월 개소예정인 '난민지원센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

□ 아동의 성적착취

- 아동대상 성착취 범죄자 등에 대한 기소 및 처벌 강화
 - 검찰에서는 아동대상 성 착취 범죄자의 효과적인 기소 및 처벌을 위해 노력
 - 전국 58개 검찰청에 성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성 범죄 수사 전담
 - 2011년 9월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 관련 범죄를 조사하는 여성·아동 범죄조사부를 신설하여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사 및 처벌 강화
 - 성범죄 전담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 ※ 여성·아동학대범죄 수사실무 과정, 여성·아동 범죄수사 전문가 과정, 성매매사범 수사실무과정(사이버교육), 성폭력범죄 수사실무 과정(사이 버교육), 아동피해자 진술분석(사이버교육)

□ 인신매매의정서 비준 등

-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및「인신매매의정서」비준을 위한 이행입법 추진
 -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 입국시키거나 알선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재발급을 알선·대여·양도하는 행위 등을 중대범죄에 추가하여 그 수익을 몰수·추징 하는「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12월 29일 국회 통과, 2012년 1월 17일 공포
 - 사법방해죄를 도입하는 「형법」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제출(2011년 7월 14일)
 - 포괄적 인신매매죄 신설을 위한「형법」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제출(2011년 10월 25일)

□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국내이행

-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범죄관련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형사재판권 확보
 - 한국인이 선택의정서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형법 제3조(속인주의), 제6조(보호주의) 규정에 의해 우리나라가 형사재 판권 보유
 - 미성년자 약취·유인행위, 국외이송목적 매매행위 등 인류공통의 보편적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형사재판권 확보를 위해 세계주의를 도입한 「형법」개정안 국회 제출('11. 3. 25. '11. 10. 25.)
 - ※ 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19대 국회 제출 예정

129

□ 소년사법

- 소년범에 대한 충분한 법률 및 기타지원 제공
 - 소년범의 경우 국선보조인 제도, 정신과 의사의 진단 등 소년사법절차 전 반에 걸쳐 법률 및 기타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해야 함(소년법 제17조의2)
 - 앞으로도 충분한 법률지원을 통해 아동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
- 안전하고 아동을 배려하는 구금보호시설 환경 조성 및 교육 직업훈련 등 강화
 - 성인과 소년수용자는 분리수용
 - ※ 남자소년수는 김천소년교도소 수용, 여자소년수는 청주여자교도소 수용
 - 소년수용자의 경우 급식 우대
 - ※ 소년수용자급식비(4200원/1일), 성년수용자급식비(3602원/1일)
 -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종합미용, 커피바리스타 등 소년수용자 교육 및 직업교육 강화
 - 향후 소년수용자에 대한 음식·교육·직업훈련 등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
 -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만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수용, 규율 있는 생활 속에서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교육, 인성교육 등을 통하여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
 - 수용생활 중에도 면회, 서신 및 전화를 통해 가족과 수시로 연락을 유지하고 가정관 운영, 가족과 함께 하는 날, 가족사랑캠프, 주말가정학습 등 다양한 가족기능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 간 신뢰 회복을 지원

- 소년범에 대한 구금처분 최소화 및 보호관찰·상담·사회봉사·집행유예 제 도 적극 활용
 - 소년범에 대한 불구속수사원칙 유지
 -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 적극 활용
 - **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를 통하여 소년범의 품행・경력・생활환경・신체・정신건강상태・요보호성 등을 조사하여 구속・불구속 기소, 소년부송치, 기소유예 등 소년의 교화・선도에 가장 적합한 처분이 가능하게 됨
 - 현재 활용하고 있는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외에도 대안교육명령부 기소유예, 상담 및 심리·예술 치료 등 강화 예정
 - 현재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교화·개선에 적합한 보호처분 결정(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법」 제18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조치
 -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써 『소년법』제32조 제7, 8, 9, 10호에 따른 처분으로 소년원 수용
 - 아동에 대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원과 업무협의를 강화하고 소년의 특성에 맞는 적절하고 다양한 처우방안을 지 속적으로 검토할 예정

□ 아동범죄피해자 및 증인보호

- 법률조력인 제도 도입
 - 2012년 3월 16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률조력 인 제도 시행 예정

131

-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해 검사가 지정한 법률조력인이 수사·재 판과정에서 법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제2차 피해 방지, 프라이버시 보장 및 피해자의 권익을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예정

- 2013년부터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제도 도입 예정
-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진술 조력인이 아동 및 장애인의 특성 및 눈높이에 맞는 방법으로 수사·재판기 관의 질문을 피해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들 이 표현한 내용에 대해 수사·재판기관에 설명하는 등 피해자의 권익 대변

○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강화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및 유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 아동 범죄피해자의 심리 치료 및 임시주거 제공을 위해 지방에 피해자복지 센터 1개소를 추가적으로 개소할 예정
 - ※ 2010년 7월 서울시 송파구 소재 피해자복지센터(스마일센터) 설립·운 영 중

2. 마치며

○ 법무부는 2007년 5월 정부 내 인권정책 협의·조정기구로 '국가인권정책협 의회'를 설치하고 2008년부터 국제인권기구의 우리나라에 대한 권고 및 권 고이행 관련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해오고 있음 -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에 대한 국내적 이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 '국제인권기구 권고 및 이행' 관련 안건 내역

* 2008년 : UN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 결과

* 2009년 :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후속조치 점검방안

* 2010년 :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후속조치 현황 사회권 제3차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 2010년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개인진정 결정

* 2011년 :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후속조치 현황

제2차 주기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외교통상부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차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여성가족부 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보건복지부

2011년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개인진정 결정

- 법무부는 정부부처 내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로 아동인권을 국제적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 시 유엔 아동권리협약 의 내용 및 아동권리위원회가 제3・4차 최종견해를 통해 제시한 권고사항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포함시키고자 함
 -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 후 권고를 포함한 2007년 5월 이후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를 영역별, 소관부처·기관별로 분류·배포하고 정부부처·기관이 핵심추진과제 개발 시 위 권고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반영할 것을 요구함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반영된 권고는 매년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국 가인권정책협의회에 보고하고 책자로 제작·배포함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제 3·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전략 모색 토론회

Ⅰ인 쇄Ⅰ 2012년 3월

Ⅰ발 행 I 2012년 3월

| 발행인 | **현 병 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I주 소 I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B/D (을지로1가 16번지)

|전화| (02) 2125-9756 | FAX| (02) 2125-9733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인쇄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362-01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